

202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CONTENTS I

제1편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_1

I.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3
1. 사회서비스의 개념	3
2. 사회서비스의 특징	3
3.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4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계정, 부처직접편성)	6
1. 개요	6
2. 추진 경과	8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편성 절차	7
4. '20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유의사항	8

제2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개요_9

I. 사업 개요	11
1. 추진개요	11
2. 추진체계	13
II.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14
1. 국민행복카드	14
2. 제공인력 카드	18
3. 바우처 본인부담금	19
4. 바우처 생성	22
5. 서비스 비용 관리	25
6.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31
7. 부당이득의 징수	34
8.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	36
9. 개인정보 보호 등	39

I CONTENTS I

제3편 | 이용자 선정 _ 41

I. 바우처 지원 대상	43
1. 지원 대상	43
2. 중복 지원 예방	44
II. 바우처 신청	46
1. 신청 개요	46
2. 처리 절차	47
III. 바우처 자격 결정	48
1. 바우처 자격 판정	48
2. 바우처 자격 결정	49
3. 이의신청	50
4. 자격관리	50

제4편 | 서비스 제공 _ 55

I. 서비스 가격	57
1. 서비스 가격	57
2. 비용 지급 기준	58
II. 서비스 계약	59
1. 계약의 효과	59
2. 계약체결 절차	59
3. 계약의 변경	62
III. 서비스 제공	64
1. 서비스 기간	64
2. 서비스 내용	64
3. 서비스 준비	65

4. 서비스 제공	65
5.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66
6. 비용 결제	67
IV. 서비스 품질관리	72
1.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72
2. 감독기관 현장점검	72
3. 기타 품질관리 활동	74
V. 기타(이용자 대상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 안내)	76

제5편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_ 77

I. 제공기관 운영	79
1. 제공기관 역할	79
2. 제공기관 등록	80
3. 시스템 관리	84
4. 회계관리	85
5. 개인정보 관리 등	85
6. 문서관리	87
II. 제공인력 관리	88
1. 제공인력 채용	88
2. 제공인력 관리	89
3. 제공인력 교육훈련	90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	92
5.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대체인력 풀(pool) 구축	94
III. 원거리 교통지원금	95
1. 지원 대상	95
2. 지원 방법 및 절차	96

I CONTENTS I

부록 1 | 관련서식 _ 101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04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06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7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08
〈서식 제3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09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10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111
〈서식 제5-1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	116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118
〈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19
〈서식 제7-1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121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23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25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26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27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128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129
〈서식 제13-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31
〈서식 제13-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32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33
〈서식 제15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록지	135
〈서식 제16호〉	원거리 교통지원금(적용·적용변경·적용중단) 신청서	136
〈서식 제17호〉	사실 확인서	137
〈서식 제18호〉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139
〈서식 제28호〉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140

부록 2 | **참고자료 _ 141**

〈참고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	144
〈참고 2〉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147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174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180
〈참고 5〉 성장촉진지역	191
〈참고 6〉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192
〈참고 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	197
〈참고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

I 주요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제2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개요											
I · 사업 개요	2. 추진체계 (p.13) [추진주체]	2. 추진체계 (p.13) [추진주체]									
	<table border="1"> <tr> <td rowspan="4">사회보장 정보원</td> <td>개별자격정보부</td> </tr> <tr> <td>사회서비스사업부</td> </tr> <tr> <td>심사관리부</td> </tr> <tr> <td>시설평가부</td> </tr> </table>	사회보장 정보원	개별자격정보부	사회서비스사업부	심사관리부	시설평가부	<table border="1"> <tr> <td rowspan="4">사회보장 정보원</td> <td>개별자격정보부</td> </tr> <tr> <td>사회서비스 보육기획부</td> </tr> <tr> <td>서비스모니터링부</td> </tr> <tr> <td>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td> </tr> </table>	사회보장 정보원	개별자격정보부	사회서비스 보육기획부	서비스모니터링부
사회보장 정보원	개별자격정보부										
	사회서비스사업부										
	심사관리부										
	시설평가부										
사회보장 정보원	개별자격정보부										
	사회서비스 보육기획부										
	서비스모니터링부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II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3. 바우처 본인부담금 나. 본인부담금 환급 2) 환급방법 (p.21) ● <신규>	3. 바우처 본인부담금 나. 본인부담금 환급 2) 환급방법 (p.21) ● 본인부담금 미환급액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 소멸시효가 지나도 환급되지 않은 미환급액은 지자체로 이관한다. - 지자체는 이관 받은 본인부담금 미환급액에서 개인정보파기 대상자의 금액은 접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3편 이용자 선정										
I · 바우처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p.43)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1. 지원 대상 (p.43)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구분	2019년	2020년
	<p>2. 중복 지원 예방 (p.44)</p> <p>가. 지원제외 대상</p> <p>②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p> <p>④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p>	<p>2. 중복 지원 예방 (p.44)</p> <p>가. 지원제외 대상</p> <p>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p>
<p>Ⅲ · 바우처 자격결정</p>	<p>4. 자격관리</p> <p>가. 바우처 지원기간 (p.50)</p> <p>-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 자격 결정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p>	<p>4. 자격관리</p> <p>가. 바우처 지원기간 (p.50)</p> <p>-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 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연장불가)</p>
	<p>4. 자격 관리</p> <p>1) 일제 재판정 (p.51)</p> <p>- 이용자의 소득 수준, 장애등급, 연령 등 변동여부를 주로 확인</p> <p>- 자격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 통보 후 자격중지, 자격 변경 등 조치</p>	<p>나. 이용자 자격 재판정</p> <p>1) 일제 재판정 (p.51)</p> <p>- 이용자의 소득 수준, 장애등급, 연령 등 변동여부를 행복e음을 통해 주로 확인</p> <p>- 불필요한 서류 징구는 최소화 하고, 자격변동 예상되는 등 필요시에만 증빙서류 제출 받아 확인</p> <p>- 자격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 통보 후 자격중지, 자격 변경 등 조치</p>
	<p>3. 이용자 선정(p.52)</p> <p>Ⅲ. 바우처 자격 결정</p> <p>④ 자격관리</p> <p><이용자 부당행위 관련 처리(표)></p> <p>③ (직권조치 검토)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유사·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서비스 중단 또는 자격중지 검토</p>	<p><참고> <이용자 부당행위 관련 처리(표)>(p.52)</p> <p>③ (직권조치 검토)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유사·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서비스 중단 또는 자격중지 검토하되, 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위중(危重)*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신속히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중의 촉구없이 즉시 서비스 중단 또는 자격중지 조치 가능</p>
	<p>4. 자격관리</p> <p>(중지사유별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p> <p><신설> (p.53)</p>	<p>바우처 미사용 (p.53)</p>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제4편 서비스 제공														
I · 서비스 가격	1. 서비스 가격 가. 서비스 가격 (p.57) - 월 <u>336,000원</u> (24시간) 또는 <u>월 378,000원</u> (27시간) - 시간당 <u>14,000원</u>	1. 서비스 가격 가. 서비스 가격 (p.57) - 월 <u>348,000원</u> (24시간), <u>월 391,500원</u> (27시간), <u>월 580,000원</u> (40시간) - 시간당 <u>14,500원</u>												
III ·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기간 가.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p.64)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u>3개월</u> (연장불가)	1. 서비스 기간 가.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p.64)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u>6개월</u> (연장불가)												
	나. 서비스 제공시간 (p.64) - 월 40시간(<u>3개월</u>)(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나. 서비스 제공시간 (p.64) - 월 40시간(<u>6개월</u>)(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비용 결제 (p.68~69p.) 다. 결제유형 3) 예외지급	6. 비용 결제 (p.68~69p.) 다. 결제유형 3) 예외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예외지급사유</th> </tr> </thead> <tbody> <tr> <td>시·군·구청장 인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서비스 종료월에 대상 자카드를 분실하여 카드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td> </tr> <tr> <td>바우처소멸,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거나, 과부족생성, 소멸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시'에만 청구 가능 </td> </tr> </tbody> </table>	구분	예외지급사유	시·군·구청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서비스 종료월에 대상 자카드를 분실하여 카드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바우처소멸,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거나, 과부족생성, 소멸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시'에만 청구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예외지급사유</th> </tr> </thead> <tbody> <tr> <td>시·군·구 승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자격해지(사망, 본인 포기, 자격만료, 일시중지 등) 등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승인하는 경우 ※ 사유발생월 당시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td> </tr> <tr> <td>사회보장 정보원 승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 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시'에만 청구 가능 </td> </tr> </tbody> </table>	구분	예외지급사유	시·군·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자격해지(사망, 본인 포기, 자격만료, 일시중지 등) 등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승인하는 경우 ※ 사유발생월 당시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회보장 정보원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 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시'에만 청구 가능
구분	예외지급사유													
시·군·구청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서비스 종료월에 대상 자카드를 분실하여 카드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바우처소멸,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거나, 과부족생성, 소멸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시'에만 청구 가능 													
구분	예외지급사유													
시·군·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자격해지(사망, 본인 포기, 자격만료, 일시중지 등) 등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승인하는 경우 ※ 사유발생월 당시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회보장 정보원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 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시'에만 청구 가능 													

구분	2019년	2020년
	<p>②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p> <p>※ '18.4.20. 현재, 서비스 제공일자가 '18.1.21~ 4.20.인 건만 청구 가능 ('18.1.21 이전 건은 청구 불가)</p> <p>- (신청기간) 매월 1일~ 말일 (단, 2019년 신청 시작일은 2월 1일임.)</p> <p>•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 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를 통해 예외지급 승인</p> <p>- (승인기한) 매월 1일~ 말일까지이며, 사군구가 전월 26일~ 당월 25일까지 승인한 예외지급 청구 건을 매월 26일 지급 (※ 19년 첫 지급일은 2월 26일)</p>	<p>②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p> <p>※ '19.11.22 기준, 서비스 제공일자가 '19.8.24~ 11.22인 건만 청구 가능 ('19.8.24이전 건은 청구 불가)</p> <p>- (신청기간) 매월 1일~ 말일 (단, 2020년 신청 시작일은 2월 1일임.)</p> <p>•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 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를 통해 예외지급 승인</p> <p>- (승인기한) 매월 1일~말일까지이며, 사군구가 전월 26일~당월 25일까지 승인한 예외지급 청구 건을 매월 26일 지급 (※ 20년 첫 지급일은 2월 26일)</p>
제5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I · 제공기관 · 운영	<p>6. 문서관리 (p.87)</p> <p>가. 관련서류 보존</p> <p>- 제공기관과 지정교육기관은 정부 바우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 한 각종 문서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p> <p>나. 보존기간</p> <p>- 문서의 보존기간은 문서의 성격, 중요도, 원본·사본 여부 등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p>	<p>6. 문서관리 (p.87)</p> <p>가. 근거</p> <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공자의 준수 사항)</p> <p>나. 자료보존</p> <p>-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자료의 성격, 중요도, 원본·사본 여부 등에 따라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함</p> <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필수(법정) 보존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p>
II · 제공인력 · 관리	<p><참고> (p.94)</p> <p>○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p>	<p><참고> (p.94)</p> <p>○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p>

| 주요변경사항 |

구분	2019년	2020년
	- 월 168,000원(24시간) 또는 월 189,000원 (27시간), 시간당 7,000원 - 월 277,500원(40시간)	- 월 174,000원(24시간) 또는 월 195,750원 (27시간), 시간당 7,250원 - 월 290,000원(40시간)

01

PART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I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지원계정, 부처직접편성)



01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I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사회서비스의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3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新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대응·지원 필요성 증가
- ⇒ 소득보장중심 사회보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육, 신체·정신건강, 직업능력개발 등을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장 필요

▶ 아동수당·청년구직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향후 소득보장정책의 대폭 강화 예상 → 이에 상응하는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해 균형적인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인가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관계,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 청년, 신중년 및 문화·여가서비스 등 종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상·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 필요
- 사회로부터 서비스·일자리를 제공받음에 따른 사회적 신뢰 형성, 삶의 질에 대한 격차 완화 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 소득보장에 비해 사회서비스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필요, 서비스 수요·공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가능
-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여지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실제 '10~'16년 간 사회복지서비스업(87%),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0.7%) 등 사회서비스 관련산업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개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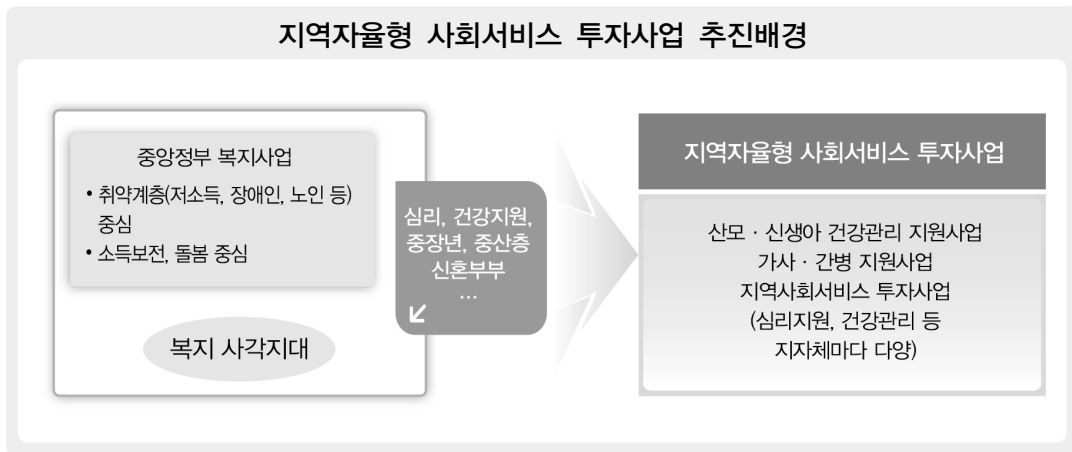


- 성장 : 인적 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 사회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 사회진출, 신중년 재충전 등 촉진으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잠재적 성장동력 확보
 - ⇒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예의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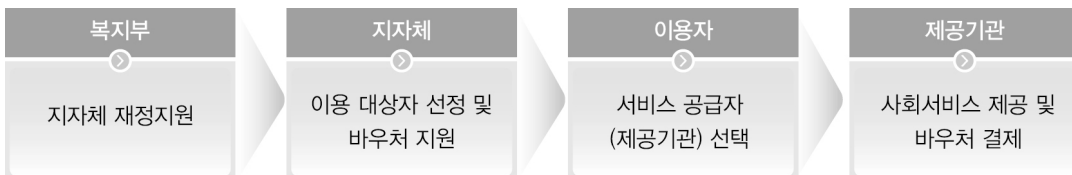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개요

-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 (추진배경) ① 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 체계)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



2 추진 경과

-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로 전환하여 지역의 사업기획 및 집행상 자율성·책임성 부여('13~)
-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하여 포괄보조 제도화 추진('1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19년~)
 - 시·도별 예산 불균형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19년 예산안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18.8)
 - 중앙부처가 예산 편성의 주체가 되며 지역의 사업기획·운영의 자율성·책임성 부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 (목적) 지역 특화발전 지원,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세입) 주세(31.5%), 농특회계 전입금(32.9%), 일반회계 전입금(28.7%) 등으로 구성
- (구조) 사업 특징에 따라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편성 절차

- (1단계/중앙정부/4월)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기본한도 통보
- (2단계/시·도/4월~5월) 시·도는 사업별 수요를 파악하여 복지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신청서를 제출(4월 27일까지)
 - ※ 시·도는 전년도 집행상황, 서비스가격 인상요인, 이용자 증감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추계하여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별 예산조정
 - 복지부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5월 25일까지 기재부 제출

- (3단계/기획재정부/6~8월) 기재부는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 사업내역 조정
- (4단계/기획재정부/8~9월) 평가에 의한 사·도별 인센티브와 추가한도 등을 검토하여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5단계/국회/12월) 차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확정

4 '20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유의사항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기획·개발 강화
 -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1단계:노인커뮤니티케어 중심)」 발표 ('18.11)
 - 사·도별 '19년 대비 '20년 증액된 예산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신규 기획·개발하거나, 복지부 시범사업, 청년 건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 * (노인 선도사업) 부산 북구·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남양주·안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청양,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
 - * (장애인 선도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운영의 지역 자율성 확대
 - 각 사·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기준정보 등을 수록한 자체 지침을 수립·운영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자율적 사업기획 및 운영 관리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사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지역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공인력 관리 및 현장 점검 지원
- 집행 관련 유의사항
 - 사·도 및 시·군·구는 매월 집행·예탁금 지급 등 예산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대기자 해소, 이용자 모집 확대 등을 통해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집행관리에 철저히 하고, 예산 미집행(반납) 과다 지자체는 성과평가에 환류 예정

02

P
A
R
T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개요

- I 사업 개요
- II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I 사업 개요

① 추진개요

가.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사업기간

- 2020.1.1.~2020.12.31.(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라.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율 : 서울 50%, 서울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참고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3호, '19.9.10., 일부 개정)_p191

마. 주요경과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시행('04년 8월, 복권기금)
 - *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일자리) 지원방식으로 추진
- 이용자 지원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사업 전환('08년 9월)
-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10년 1월)
- 65세 이상 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이관('10년 2월)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2.2.5)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12.7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12.8.4.)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통합관리 및 보조금 포괄보조 시행('13.2월)
- 사업 명칭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변경('13.2월)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회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15.1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19년~)

2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사회서비스 사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회서비스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
사회보장 정보원	개별자격정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이용 신청(행복e음)
	사회서비스 보육기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예약금 관리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리 ● 바우처 비용 및 교통비 지급 및 청산 ●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및 통계 관리
	서비스모니터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평가 등 품질관리
시·도	사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 사업비 예산 예약 및 집행상황 관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제공인력 교통지원금 청구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및 현장점검
	읍·면·동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신청 접수
중앙 사회서비스 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컨설팅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서비스 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노무관리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제공인력 급여 지급 ● 바우처 시스템 활용

II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1 국민행복카드

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 1)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2)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 3사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3)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달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 바우처 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기 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 카드 계속 사용 가능

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 읍·면·동) ● (만 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카드 제작·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1)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 (만 14세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_p106)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2-1호_p107) 징구
- (만 14~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 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 (만19세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2-2호_p108)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 2)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 ① 만14~19세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 ② 만19세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다.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 1)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 2)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주민센터로 배송
 - * 주민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3)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4)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신규 신청 시와 동일)

2) 제공인력 카드

가. 제공인력 카드

- 1) 신청권자 : 제공인력 소속 제공기관
- 2) 신청서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
 - * 전용단말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제공인력은 제공인력 카드 불필요(제공인력 ID 입력으로 대체)
 - ☞ [서식 제3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_p109
 -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_p110

나. 제공인력 ID 등록

-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신규 등록 시 생성된 제공인력 ID를 결제 단말기에 등록한 후 결제 처리 진행
 - *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등록·조회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또는 제공인력현황조회)

3 바우처 본인부담금

가. 본인부담금 납부

1) 납부방법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바우처 카드 또는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전월 말일 18시까지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됨
- *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되, 송금 시 입금자는 '이용자 이름'으로 함
- * '15년 3월부터 본인부담금을 1년치(12개월분) 이내로 사전 입금 가능

2) 납부액 변경

- 이용시간 변경, 자격등급 변경 등의 경우 자격변동 결정통지를 한 다음 달부터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며, 이용자는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다음 달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
- 단, 변경결정 통지일 이전에 이미 변경 전 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

예시 본인부담금 변경시 기 납부액 처리 방법

변경 전 본인부담금	변경 후 본인부담금	당월 바우처 생성 결과
A-나형(20,880원)	B-나형(23,490원)	● 차액(2,610원) 납부해야 생성
B-나형(23,490원)	A-나형(20,880원)	● 추가액 납부 없이 생성 다음달은 18,270원만 납부 (2,610원은 기 납부된 상태)

나. 본인부담금 환급

1) 환급사유

- 사망, 본인포기, 자격 중지, 미사용 등으로 당초 주어진 지원기간(지원시간)보다 서비스를 덜 이용했거나 본인부담금을 과입금한 경우에 환급

2) 환급방법

●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2주 이내에 환급

* 환급 시 바우처 생성에 활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만 환급 가능

- (사업연도 종료 시) 본인부담금 잔액(초과 입금분+바우처 결제 후 잔액)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월 처리

*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환급 실시

- 서비스 해지자

-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해당 대상자의 환급계좌로 서비스해지 후 60일 이내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예 : 8월 자격이 종료된 경우 9월말 환급), 단, 환급 계좌가 부정확한 경우 시·군·구를 통해 정상 계좌가 확인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됨에 유의

- (전월 서비스 해지자) 당월 환급 대상자로 환급계좌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요청 공문 발송

※ 예시 : 서비스해지일이 '19. 1. 10일인 대상자의 경우, '19.1.10~31일까지는 당월해지자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계좌변경이 가능하나, '19.1.31일 이후에는 직접변경이 불가하므로 정보원으로 변경요청 공문 발송

- (당월 서비스 해지자) 익월 환급 대상자로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변경 등록 가능(공문을 통한 변경요청 불필요)

※ 예시 : '19.1월 현재 서비스 해지일이 '19. 1. 1~1.31일에 속하는 대상자

※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미환급자조회(당월 해지자 구분값 선택 후 대상자 조회)



- 계좌오류로 인한 미환급자 환급
 - (대상) 과거년도~당해년도 전월까지의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 중 계좌정보 불일치로 환급이 보류된 대상자
 - ※ 예시 : 서비스해지일이 현재 월 기준 전전월부터 ~ '09년에 속하는 대상자
('19년 3월 1일 현재 서비스해지일이 '09~'19년 1월 31일에 속하는 대상자)
 - (환급) 매월 1일~15일까지 시군구 담당자가 관내 미환급 대상자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하면 해당 계좌로 미환급금을 환급(공문을 통한 변경요청 불필요)
 -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미환급자조회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환급내역조회
- 환급 예정자의 환급계좌 변경
 - 본인부담금 미환급액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 소멸시효가 지나도 환급되지 않은 미환급액은 지자체로 이관
- 지자체는 이관 받은 본인부담금 미환급액에서 개인정보파기 대상자의 금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할수 있음

다. 본인부담금 이자 환급

1) 본인부담금 이자

-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 *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가 적용
- 이자 발생액은 대상자별로 개별 통지되지 않으며,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 및 전자바우처 포털(대상자)을 통해 확인이 가능

2) 이자 환급

- 본인부담금 이자는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발생분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이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가상계좌로 입금
 - *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

4 바우처 생성

가. 생성시점

1)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시점에 따라 바우처 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2) 바우처 생성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급여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확인이 가능하며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

3) 당월 바우처 생성 신청

-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27일 18:00시까지 대상자 전송시 ‘바우처수신 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결정 정보를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가능
- 시·군·구 담당자가 신규 대상자에 한해 ‘당월신청’ 여부에 ‘Y’를 선택하지 않고 결정 정보를 전송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 신청 가능

참고

본인부담금 납부 시점별 바우처 생성시기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 고
정기 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말일이 토·일·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생성
수시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 당월 15일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월 1일~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당월 1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생성
추가 생성	제공 기관 신청일 익일	당월 16일 ~ 당월 25일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당월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가능

나. 생성수량

- 결정 통지된 월별 지원시간(24/27/40시간)만큼 생성
- 다만, 전월 미사용 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며 바우처 잔량이 생성제한(CAP) 적용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바우처가 생성

다. 생성원칙 : 생성제한(CAP) 적용

1) 생성제한(CAP)의 개념

- 전 월의 이용자별 바우처 잔량에 따라 당 월의 바우처 생성여부 및 생성 수량이 정해지는 방식

2) 생성제한(CAP) 적용 기준

- 전 월 미사용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분 이하(24/27/40 시간 이하) 남아 있는 경우, 남은 바우처 잔량은 당월 바우처로 이관
 - * 단, 사업연도 종료(매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바우처 잔량 소멸
- 전 월 미사용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분을 초과(25/28/41시간 이상)하여 남아 있는 경우, 당월 바우처는 생성되지 않음

예시

바우처 생성 CAP 적용 사례

(예시) 이용자의 지원시간이 월 27시간인 경우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27시간	27시간	0시간	0시간	27시간	27시간
이용가능 바우처	27시간	51시간	51시간	41시간	53시간	40시간
실제 이용	3시간	0시간	10시간	15시간	40시간	10시간
잔여바우처	24시간	51시간	41시간	26시간	13시간	30시간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미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라. 생성제한(CAP)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1)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이용 전·후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 후 이용
 - * 바우처 잔량조회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및 ARS(1644-9911)

2)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이용자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
 - * 서비스를 정상 제공한 경우라도 바우처 잔량 부족 시 비용 미지급

5 서비스 비용 관리

가. 비용 관리 개요

-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 2) 관리 내용 : 서비스 비용의 예탁 및 지급
- 3) 업무위탁 및 비용 예탁 주체 : 시·군·구청장
- 4) 수탁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나. 비용의 예탁

1) 비용 예탁

-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예탁
 - * 사회보장정보원이 연1회 지정계좌를 안내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 화면에서 시·군·구별 지정계좌 확인이 가능
 - * 사업비 예탁 시 예금주는 ‘지자체명 + 사업명’으로 부여 (예 : 서울종로구가사, 충북충주시가사, 제주제주시가사 등)
- 국비·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비용지급 일정에 따라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필요

[월별 서비스 비용지급 일정]

구 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다음달 5일

2) 비용 예탁 확인 및 사업연도 내 예탁금 환급

- 시·군·구청장은 사업비 예탁 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 정상 예탁 여부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예탁금현황조회》예탁금현황조회

-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단 계	주체	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 확인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사용액, 잔액 및 환급가능금액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 환급계좌 확인
공문발송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환급요청금액 및 환급계좌 명시)
수시환급 신청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시환급 신청 (환급요청금액, 환급계좌등록, 계좌실명조회,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 시·군·구별 사업별 지정 환급계좌로 예탁금 환급
수시환급 결과조회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수시환급 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예탁금환급관리》수시환급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예탁금환급관리》수시환급결과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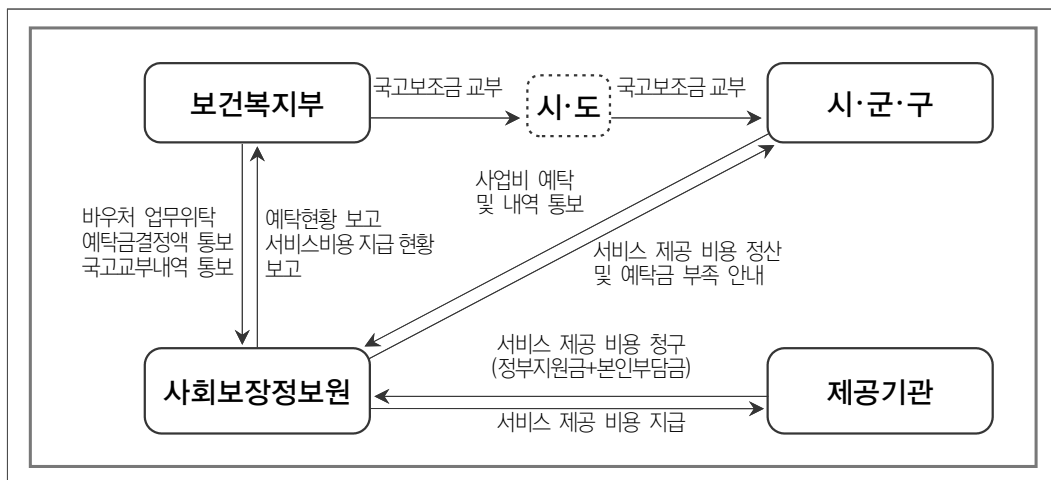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단 계	주체	업무내용
오예탁 사업명, 오예탁 내역 확인	●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확인
공문발송	● 시·군·구	● 오납예탁금 출금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계좌 명시)
오납 예탁금 출금신청	●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변경사유, 대상사업, 출금요청금액,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 지정 정정예탁 계좌로 예탁금 오납출금 처리
예탁금입출금조회	●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오납예탁금 출금 결과 확인

- ※ 업무처리 주체는 오입금 사업비 보유 부서로, 오입금 받은 부서에서 신청 및 공문 발송
-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예탁금환급관리 《오납예탁금출금신청
-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입출금조회(실시간)

참고

서비스 비용 예탁 흐름도



다. 비용의 지급 및 정산

1) 비용의 청구

- 별도의 청구 절차는 없으며, 제공기관(제공인력)이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청구됨

2) 비용의 지급

- (정기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
 - *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약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다음달 5일 지급)
 -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 시·군·구별 예약금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약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 (수시지급) 예약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약하면 예약일 2~3일내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참고

월별 서비스 비용 지급일정

구 분	서비스 비용 결제(청구) 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다음달 5일

3) 비용 지급 계좌

-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전송한 ‘제공기관 계좌’로 지급
 - * 제공기관 계좌는,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 명의 계좌도 사용 가능
-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계좌변경 요청
 - * 시·군·구는 해당 변경계좌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재 전송



4) 비용의 정산

가) 월별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예탁금 정산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

* 단, 시·군·구 통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한 자료로 같음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매출 및 정산》월별정산관리》월별정산내역조회

나) 연도말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도 및 시·군·구에 예탁금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 시·도별 및 시·군·구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 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전자바우처시스템》매출 및 정산》연도별 정산관리》예탁금정산조회

라.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과 이자수입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

* 이자수입은 서비스 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이 계약한 금리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 산출
(환급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마. 과·오 청구 비용의 반환 등

1) 과·오 청구 사례 확인

- 제공기관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토대로 비용의 과다청구, 오류청구 등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

* 서비스 비용 외 교통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확인

2) 과·오결제 반납 등록(제공기관)

- 과·오 청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과·오 결제 반납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반납 등록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당해연도 1.1.~12.31.) 내에만 가능하며, 사업연도가 지나면 해당 시·군·구로 직접 반납하여야 함

* 반납등록 메뉴 : 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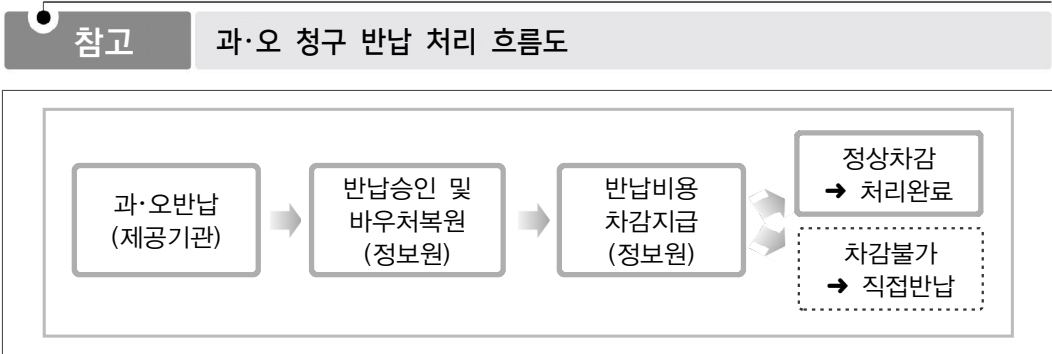
* 결과확인 메뉴 : 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3) 반납 승인

- 사회보장정보원은 반납 내역을 확인 후 반납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건 바우처에 대한 소멸처리도 가능

4) 과·오 반납 비용의 차감처리

- 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 청구 반납 승인일이 속한 시점 이후의 서비스 비용 지급 시 반납등록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 단, 지급해야 할 서비스 비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반납 등록 금액 보다 작아서 차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에 직접 반납하도록 요청
- * 이 경우,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비용을 반환



⑥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가. 업무처리절차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청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검토	지급보류 대상선정	사회보장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권법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지급보류 안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시지 발송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제공기관 → 사회보장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검토	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 최종 확인 ※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방법) 제공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청구비용 검토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
	검토결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에서 검토결과 내역 통보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급	비용지급	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 최종 확인 후 검토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나. 대상선정

1) 지급보류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
 - * 특별한 사유 :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2) 대상선정 주기 : 매일

다. 소명제출

1)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부적정'으로 확인

2) 소명자료

- 공통 서류 : '사실 확인서'(서식 제17호)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 ☞ [서식 제17호] 사실 확인서_p137

라. 검토결과 통보

1) 통보시기 및 방법

- 최종 확인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검토결과 통보

2) 검토결과 종류

- 적정 :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 이외의 결제 건
- 청구철회 : 제공기관에서 청구철회 처리한 경우



- 부적정 :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또는 청구철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확인하고 종결 처리(청구비용 미지급, 최종 확인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보)

마. 비용지급

1) 지급시기

- 정당한 청구로 판정된 건에 대해 익월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구 분	결제일	지급일
1차	1일 ~ 10일	익월 5일
2차	11일 ~ 20일	익월 15일
3차	21일 ~ 말일	익월 25일

* (예시) 결제일(5일) → 지급보류(6일) → 소명요청 및 자료제출(6~19일) → (필요시) 추가소명 요청 및 자료제출(20~26일) → 최종 확인 → 비용지급(익월 5일)

2) 기타사항

- 최종 확인 결과가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인 경우 이미 소진한 바우처는 미 복원
- 또한, 해당 청구 건에 연관된 가산 단가와 교통지원금 등도 지급불가

바. 재검토

-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토 신청 가능
-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서식 제18호)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 ☞ [서식 제18호]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_p13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사회서비스정책과, 2016.6) 참조 바람, 부적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관 관리·감독 철저 요망

⑦ 부당이득의 징수

가. 부당이득 징수 개요

-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 2) 징수사유
 - 제공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등
- 3) 징수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징수절차

- 1) 징수처분 확정(시·군·구청장)
 - 징수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처분 확정
- 2) 부당이득금의 반환 요청
 - 가)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부당이득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차감지급 요청 가능
 - 나)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안)]

단 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완료	● 시·군·구	●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		
부당이득 차감 등록	●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		
공문발송	●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운로드 후 공문 발송 (다운로드 파일은 '붙임' 파일로 송부)
↓		
요청내역 확인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		
차감실시	정보원	●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여부 확인 후 차감지급 실시

다) (부당이득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급을 요청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차감지급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라) (결과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처리가 완료된 후 해당 시·군·구로 처리결과를 통보

마) (차감지급 결과 확인) 시·군·구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차감지급 결과 확인

바) (직접반납)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대집행 내역에 대한 차감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직접 반납 요청 시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함에 유의

** 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대집행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부당이득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3)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를 주도한 사람에게 그 가액만큼 환수함.
다만, 부정사용이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에 가액환수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

8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

가. 관련 사이트

- 1) 대국민 포털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2) 업무지원시스템 : 전자바우처시스템 <http://news.socialservice.or.kr>

나. 활용범위

- 일반국민, 이용자, 각 기관 전자바우처 업무 처리 담당자
 - * 업무 처리 담당자 : 시·군·구 업무 담당 공무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지정 교육기관
- 업무처리 담당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업무용 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 처리
 - * 업무용 전자바우처 시스템 : <http://news.socialservice.or.kr>

다. 활용내용

-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사업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조회 등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존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송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행복e음”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바우처 생성내역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 미생성자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미생성자 대부분은 ‘본인부담금 미납’ 으로 미생성
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에서 당월생성이 누락되어 결정 정보가 전송된 대상자의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하는 화면
본인부담금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입금내역 및 잔액 등을 조회하는 화면 ● 조회시점의 잔액에 따라 바우처 생성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
본인부담금미환급자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1~15일 사업연도별(09년~당해년도) 환급계좌오류로 인한 본인부담금 미환급자를 조회하고 변경 등록하는 화면 ● 당월 서비스해지자(익월환급예정자)의 계좌정보 변경등록도 가능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행복e음’ 을 통해 환급을 요청한 대상자 및 중지전송 등으로 자격이 종료된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환급내역 조회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및 제공인력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사업비 예탁금계좌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예탁금현황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탁 내역과 급여 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탁 후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 사업비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문발송 후 환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환급결과를 조회하는 화면

화면명	주요기능
오납예탁금출금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탁 시 예탁계좌 오지정 등으로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계좌로 오예탁된 경우,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차감지급요청/ 차감지급현황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결제건 중 부정결제로 환수해야할 결제내역을 조회하여 차감지급 등록 시 활용하는 화면
예외지급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화면
바우처미사용자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내역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전후로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전연도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내역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용의 사유별 미지급 세부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서비스비용, 가산단가, 교통지원금 등 - (사유) 예탁금부족, 계좌오류, 출금액이0보다작음(차감지급불가) 등
업무편람 게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업무편람 자료 확인가능 (변경 사항 포함)

- 제공기관 담당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기관 업무 매뉴얼(별책) 참고

9 개인정보 보호 등

가. 업무 관련 정보보호

-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36조제1항)

나. 개인정보 보호

- 시·군·구 소속 공무원(개인정보처리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등)
- 시·군·구청장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관련법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03

P
A
R
T

이용자 선정

- I 바우처 지원 대상
- II 바우처 신청
- III 바우처 자격 결정

03 이용자 선정

I 바우처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16. 1. 1. 이후 신규 신청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참고 2]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_p147

☞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_p174

2 중복 지원 예방

가. 지원제외 대상

참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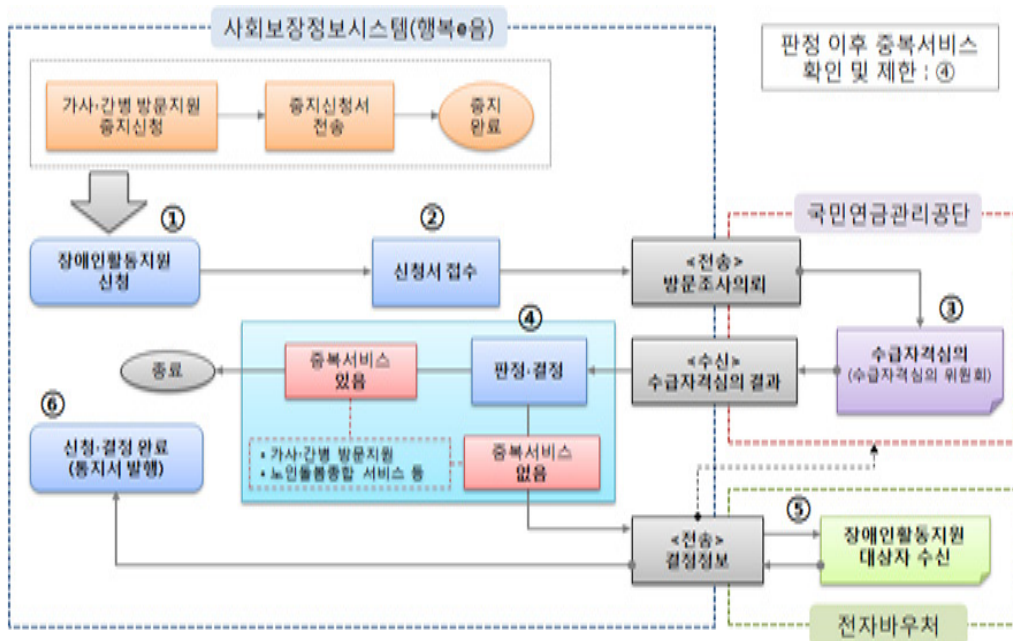
나. 중복 수급 차단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
-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및 차단이 곤란한 경우는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수혜 예방
- 동일 가구 내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제공인력의 업무를 각각 대상자 관련 서비스로 제한하여 중복수급을 방지

다. 중복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확인 절차

- 수급자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서비스 제한을 “신청 시”에서 “서비스 지원 결정 시”로 변경

*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자가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결정완료 후 바우처 생성 및 이용까지 통상 1달 소요



II 바우처 신청

1 신청 개요

가.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신청기간·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_p104
 - ☞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_p106
 - ☞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_p107
 - ☞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_p108
 -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_p110

② 처리 절차

참고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 기존대상자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		
통 지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구 분	주 체	내 용
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 입원 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 욕구 조사
↓		
신청·접수	신청인→의료급여관리사 →사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신청서류 작성 ● 의료급여관리사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사군구에 전달
↓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		
통 지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Ⅲ 바우처 자격 결정

① 바우처 자격 판정

가. 자격 판정 원칙

- 대상자의 건강·육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나. 자격 판정 방법

1) 건강 및 육구 조사

가) 조사주체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

- *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 행복e음에 입력하여 시·군·구로 전송(시·군·구 담당자는 조사내용 확인하여 판정)

나) 조사방법 : 공부(公簿) 및 시스템 확인, 대상자 또는 관계자 방문 현지조사 또는 상담 등

2) 소득 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 *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가)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② 바우처 자격 결정

가. 자격 결정

-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 담당자가 입력한 건강·육구상태 및 소득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결정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 수요가 많을 경우, 가급적 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

나. 결정자료 전송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자격결정 자료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즉시 전송
-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27일 18:00시까지 전송된 자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생성
-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 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송일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생성
 - * 매월 27일까지 신규 대상자 전송 시에만 적용 가능(당월 등급변경은 불가)하며 “행복e음” 내 ‘바우처 송수신 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 후 전송

다. 자격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
- 결정통지문은 행복e음을 통해 출력 활용
 - ☞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_p111
 - ☞ [서식 제5-1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_p116

3 이의신청

가. 신청개요

-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2) 신청권자 : 서비스 신청권자와 동일
- 3)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4)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_p118

나. 이의신청 처리

- 1)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접수
- 2) 이의신청 검토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 검토
 - 시·군·구청장은 검토 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3)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검토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4 자격관리

가. 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연장불가)

나. 이용자 자격 재판정

- 시·군·구 담당자는 자격 결정 이후에도 대상자의 건강 및 욕구상태의 변화, 소득 수준 등을 재판정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일제 재판정 :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실시

- 이용자의 소득수준, 장애등급, 연령 등 변동여부를 [행복e음](#)을 통해 주로 확인
- 불필요한 서류 징구는 최소화 하고, 자격변동 예상되는 등 필요시에만 증빙서류 제출받아 확인

- 자격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 통보 후 자격중지, 자격변경 등 조치

* 일제 재판정은 건강보험료 변동주기(매년 5월, 11월)와 연계하여 실시

2) 수시 재판정 : 개별 이용자의 바우처 지원기간 만료시점(수급 결정 또는 연장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실시

- 일제 재판정 항목 외 건강상태 또는 욕구상태 등도 종합 재판정
- 재판정 결과에 따라 지속지원 여부 또는 자격등급조정 여부 등 결정

참고

이용자별 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 이용자('20년 1월 현재)
 - 전년도 자격연장일 또는 자격결정일을 알고 있는 경우 : 자격연장 또는 신규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간
 - 이전연도 자격연장일 또는 자격결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 : '20.1.1.~'20.12.31.까지 1년간을 바우처 지원기간으로 간주
- '20년 신규이용자('20.1.1.이후 자격 수급자) :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다. 연령도래자·사망자 자격관리

1) 연령도래자 자격관리

- 시·군·구 담당자는 이용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만 65세 도달일'이 속하는 달 15일에 "행복e음"을 통해 직권으로 자격 중지 처리를 함

- 이 경우 대상자 자격은 중지되나 해당 월 서비스 이용 및 기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결제는 자격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24:00까지 결제가 가능
- * '기 제공서비스에 대한 결제'란 변경결정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시에 결제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의 소급 결제를 말함

2) 사망자 자격관리

- 시·군·구 담당자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직권으로 자격 중지 처리를 함
- 이 경우 바우처 자격은 자격 결정(직권중지)일로부터 종료되며, 기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결제는 자격결정일 당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3) 시스템을 통한 자동처리

- 주민등록상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신고가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직권 자격 중지 결정 처리를 하기 전이라도 '만 65세 도달일' 또는 '사망신고일'이 속한 달의 익 월부터는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자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바우처 자격은 직권중지 자동처리일로부터 종료되며, 기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결제는 직권중지일 당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라. 이용자 부당행위 처리

- 제공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는 아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서비스 중단 또는 자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 고

이용자 부당행위 관련 처리

- ① (보고) 관련 행위 발생시, 제공기관은 사실관계가 기록된 제공기록지 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보고
 - ② (사실조사 및 경고) 시·군·구는 사실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및 재발 방지 촉구
 - ③ (직권조치 검토)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유사·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서비스 중단 또는 자격중지 검토하되, 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위중(危重)*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의 촉구없이 즉시 서비스 중단 또는 자격중지 조치 가능
- * (위중 행위 예시) 신체 폭행, 성폭행, 성추행 등

마. 기타 자격관리

- 시·군·구 담당자는 이용자의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각 사유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자격을 관리
 - 바우처 자격이 변경된 경우, 기 제공 서비스에 대한 결제는 자격변경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 ‘기 제공서비스에 대한 결제’란 변경결정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시에 결제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의 소급 결제를 말함

[중지사유별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급여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연령 도래 등)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판정결과 (등급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등급 외 결정	수급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04

PART

서비스 제공

- I 서비스 가격
- II 서비스 계약
- III 서비스 제공
- IV 서비스 품질관리
- V 기타(이용자 대상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 안내)

04 서비스 제공

I 서비스 가격

1 서비스 가격

가. 서비스 가격

- 월 348,000원(24시간)/월 391,500원(27시간)/월 580,000원(40시간), 시간당 14,500원

나.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다.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참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48,000원	월 348,0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27,120원	월 20,88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91,500원	월 379,760원	월 11,74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68,010원	월 23,49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80,000원	월 580,000원	면제

② 비용 지급 기준

가.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예시)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

나.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예시

가사·간병 서비스 비용지급 시간 계산

●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30분으로 산정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 (예시) 2시간 40분 서비스 제공 → 2시간 30분 서비스비용 지급

2시간 45분 서비스 제공 → 3시간 서비스비용 지급

II 서비스 계약

1 계약의 효과

- 서비스 제공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세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문서로 정하는 과정임
 - * 법규 및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서비스와 그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간 상호 동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함

2 계약체결 절차

☞ 실제 계약 체결 절차는 제공기관 및 이용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가.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1) 바우처 이용자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2)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 적격자 확인 : 배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도과 여부 등 확인
- 제공기관은 원거리 거주, 교통 불편, 수발 곤란, 소속 제공인력 매칭 애로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기피하는 것을 지양
- 특히, 계약의 성립 후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에 각별 유의

관련법

사회서비스 제공자 준수사항(법 제19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이상위반
마. 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초기 상담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가정환경, 요구사항 등을 파악
-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구두 합의 및 서비스 제공관련 협조사항 안내
 - * 합의·안내사항 :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방문 일정, 서비스 제공인력 등

다. 제공인력 매칭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배치 상황,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공인력을 이용자와 매칭하여야 함
- 단,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인정 제공인력(가족) 예외)

관련법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본 사업 지침에서는 '동일 주민등록 세대'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라. 계약서 작성

- 1) 작성시점 :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최초 서비스 제공일
- 2) 계약 당사자 : 제공기관(대표), 이용자
 -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
- 3) 계약서 포함사항 :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기타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감 가능(2부 작성, 1부씩 보관)

참고

서비스 제공계약서 필수 사항

- ① 계약기간 ② 서비스 내용 ③ 계약금액 (총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④ 제공시간, 제공요일
⑤ 제공인력 ⑥ 손해배상책임

☞ [참고 6]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_p192

마.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 최대 12개월분 본인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 가능 (예시 : 본인부담금이 월 11,740원인 대상자의 경우 최대 140,880원까지 입금이 가능)

바. 계약정보 등록

- 제공기관은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바우처 생성
 - * 계약자 정보 등록사항 : 이용자 기본정보, 매칭 제공인력 정보(제공인력, 인정 제공인력(일반, 가족) 등

3 계약의 변경

가. 계약내용의 변경

- 1) 변경사유 : 계약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 계약내용 : 제공시간, 제공요일,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 등
- 2) 변경방법 :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서명
 -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
 - * 이때 제공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제공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간주



나. 계약의 해지

- 1) 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전 또는 후에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 2) 해지방법 :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
- 3) 제공기관 변경 :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Ⅲ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기간

가.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나. 서비스 제공시간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② 서비스 내용

참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표준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 [참고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_p144

3 서비스 준비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물품 등을 준비

예시 **가사·간병 바우처 서비스 준비물**

방문 첫 날 준비 서류 (가급적, 파일철 형태로 준비)	기타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계약서(2부) - 이용자 안내문 - 상해보험증명서(사본) - 제공인력 신분증 - 제공인력 자격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서비스 제공기록지, 결제단말기, 제공인력 바우처카드 - 서비스 매뉴얼(필요시) - 서비스 보조도구(필요시) - 제공인력 개인용품(필요시) : 유니폼, 명찰, 앞치마, 개인수건, 개인 고무장갑 등

제5편
서비스 제공
준비

4 서비스 제공

가. 제공인력 활동 수칙

- 제공인력은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가치관, 생활방식 등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
- 제공인력은 출퇴근 시간 및 서비스 계약 내용을 준수
 - *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시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와 사전 협의(또는 동의)

나. 이용자 이용 수칙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함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함
-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부를 때에는 공식적인 호칭(예시 : 요양보호사님 등)을 사용, 서비스 요청 시에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요청

- 욕설 등과 같이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폭력, 성희롱 등은 금지
-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준수

⑤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가. 제공기록 작성

- 제공인력은 당일 제공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
 - * 다만, 지체 장애 등으로 이용자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 서비스 제공 여부는 바우처시스템 및 제공기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제공기록지에는 기본적인 기록사항 이외 당일 발생한 이용자 관련 특이사항, 서비스 및 계약관련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서식 제15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록지_p135

나. 특이사항 보고

- 제공인력은 이용자 신체 이상 또는 응급 상황, 사건·사고, 기타 계약 또는 서비스 관련 주요 요청사항 및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소속 제공기관에 즉시 보고
- 제공기관장은 중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



⑥ 비용 결제

가. 결제원칙

- 서비스 제공 당일 업무 종료 후 이용자의 자택에서 실시간 결제
 - * 이용자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제공인력이 소지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용자가 허락한 경우에도 소지 불가)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카드(ID)로 결제
 - * 제공인력카드(ID)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등이 불가하므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과 결제 정보는 일치해야 함
- 서비스 제공인력과 결제 정보(제공인력카드, ID)가 불일치할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비용 청구로 간주되어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처분됨

나. 결제수단

- 전용단말기·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

다. 결제유형

- 1) 정상결제 : 이용자 카드를 통한 실시간 결제
- 2) 소급결제 : 이용자 카드를 통한 사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유를 제공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함
 - 소급결제는 실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 60일 초과 시 단말기 등 결제수단을 활용한 소급결제가 불가함에 유의

3) 예외지급

① 개요

-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 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 처리

[예외지급 청구대상]

구 분	예외지급 사유	제출서류	제출처
시·군·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자격 해지(사망, 본인포기, 자격만료, 일시중지 등) 등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승인하는 경우 ※ 사유발생월 당시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공문 ●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기록지 -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되어 바우처가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 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에만 청구 가능 		사회보장 정보원

※ 바우처 미생성 대상자는 해당 월 예외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반드시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필요

② 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

㉠ 시·군·구청장 인정

-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군구청장 인정 사유시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 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 제공 기록지,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
- ※ '19.11.22 기준, 서비스 제공일자가'19.8.24.~11.22인 건만 청구 가능'(19.8.24. 이전 건은 청구 불가)
- (신청기간) 매월 1일 ~ 말일(단, 2020년 신청 시작일은 2월 1일임)

-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 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매월 1일~말일까지이며, 시·군·구가 전월 26일~ 당월 25일까지 승인한 예외지급 청구 건을 매월 26일 지급 (*20년 첫 지급일은 2월 26일)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

제공기관명	사업자 번호	대상자	주민번호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등급	서비스 제공일시	청구금액 (포인트)	청구사유	증빙서류
OO 복지 센터	111-11-11111	홍길순	111111-2222222	가시간병 (006001)	A-가형	2020.01.10. 14:00~16:00	29,000	자격만료 대상자의 카드분실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2020.01.17. 14:00~16:00	29,000		
						2020.01.24. 14:00~16:00	29,000		

[작성방법]

- 사업유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세부사업명과 서비스코드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
- 등급 : 서비스 제공 당시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서비스 제공일시 및 청구금액 : 실시간 회당 결제 원칙으로 서비스 제공 회차별 서비스 일자 및 청구금액을 작성
- 청구사유 :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단 계	내 용	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공문, 증빙서류(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 인정'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말일
시·군·구	예외지급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말일
정보원	비용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26일

㉔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제공기관은 정보원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하는 ‘예외지급청구 안내’에 따라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신청
- 정보원은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단 계	내 용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제출방법 : FAX 발송(☎ 국번없이 1600-4397)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		
사회보장정보원	예외지급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사회보장정보원	비용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라. 결제절차

1) 시작시간 기록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용자 카드와 제공인력 카드를 결제단말기에 접촉하여 시작 시간 기록
- * 스마트폰 등의 경우는 이용자 카드만 접촉



2) 종료시간 기록

-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 카드와 제공인력 카드를 결제단말기에 접촉하여 종료 시간 기록
 - * 스마트폰의 경우는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자 카드만 접촉
 - * 기록된 시작·종료 시간 정보에 따라 제공시간이 자동 계산되어 비용이 청구됨



전자바우처시스템 결제유효기간 연장 및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 기능

-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 (개요)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 여부 'Y' 표시 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이 가능
 - ※ 매월 1일부터 27일까지 행복e음 →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대상자에 한함
(화면경로) 전자바우처 >> 대상자관리 >> 대상자자격정보관리 >> 당월생성 미체크자 관리

IV 서비스 품질관리

①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가. 자체 만족도 조사

- 1) 조사주체 : 제공기관 대표, 관리책임자 등
- 2) 조사대상 : 서비스 이용자(또는 가족)
- 3) 조사시기 : 반기 1회 이상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 4)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또는 상담)
- 5) 조사내용 : 서비스 품질 구성요소 전반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수준, 제공인력 태도 및 전문성, 서비스 시간 준수여부, 수범 사례, 불편사항, 개선 요청사항 등
- 6) 결과활용 : 조사결과(기관 자체양식)는 다음 사업 연도까지 보관하고,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자체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

나. 상시 품질 관리

- 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자의 요청, 민원 등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및 대응,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견 조정 등

② 감독기관 현장점검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나. 시·군·구 주관 현장점검

1) 점검주체 :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

* 시·군·구 주관 현장점검은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과 연계 시행 가능

2) 점검대상·점검주기 : 관내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 관내 제공기관의 서비스 범위가 기타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라도 동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원칙적으로 등록지 시·군·구에게 있음
- 다만, 이 경우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는 바우처 이용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와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협조방법 : 정보 공유, 자료제공, 업무협조, 합동 지도점검 등

3) 사후관리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시·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지적·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여부 확인

다. 시·도 및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

1) 점검주체 : 광역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2) 점검대상·점검주기 :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 시·도 주관 현장점검은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과 연계 시행 가능

3) 사후관리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동 사항을 통보
- 통보를 받은 시·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 [참고 기]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_p197

③ 기타 품질관리 활동

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2)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위탁수행 : 사회보장정보원)
- 3) 평가주기 : 매 3년마다('19년, '22년 시행)
- 4) 평가대상 : 등록 제공기관
* 품질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기관은 자체평가로 실시
- 5) 평가등급 : 전국단위로 평가하여 5등급 상대평가
- 6) 평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및 평가, 서비스성과(이용자 만족도 포함) 등

7) 평가결과 활용

- (결과공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
* 전체등급(A~D, F) 기관 명단 공개
- (인센티브) 상위 10% 기관 및 지난 평가 대비 2~3등급 향상 기관 포상금 지급, 장관표창 및 현판 수여(A등급 기관)
- (우수기관) 취약지표 중심 심화교육, 품질유지점검 등
- (미흡기관) 1:1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우수기관 방문 등

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조사 전문기관 위탁)
- 2) 조사주기 : 매년
- 3) 조사대상 : 당해 연도 표본 이용자(사업별 1천명 내외)
- 4)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및 FGI(초점집단 인터뷰)



다. 부정수급 모니터링

1)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서비스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일반 국민으로부터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

참고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① 신고 접수(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등) → ② 예비조사(사회보장정보원) → ③ 현장점검(복지부, 정보원, 지자체) → ④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등록 시·군·구)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02-6360-6799 또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2) 전자바우처 시스템 모니터링

- 전자바우처 시스템상의 결제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여 이상 결제 패턴 등 자동 점검·추출

* 이상결제유형(예시) : 일괄결제, 소급결제, 동시간대 중복결제, 심야결제, 연속결제 등

V

기타(이용자 대상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 안내)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옥내 전기설비 사용 중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신속 출동하여 국민 불편해소 및 전기재해 예방

● 사업추진 근거

- 전기사업법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 응급조치 대상 / <동법시행령 제42조의4>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1급~3급까지의 장애인
- ▷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 독립유공자와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 사회복지시설

● 응급조치 방법

- 전기고장 발생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연락하면 무료로 출동하여 응급조치 시행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하며, 전문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개·보수 진행

*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 경미한 전기공사

- ▷ 누전차단기류, 배선용차단기류의 교체
- ▷ 전등기구(램프포함), 콘센트·스위치류 등 배선기구 교체
- ▷ 노후배선, 누전부위 배선 분리 등 보수 및 교체에 관한 공사

05

P
A
R
T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 I 제공기관 운영
- II 제공인력 관리
- III 원거리 교통지원금



I 제공기관 운영

1 제공기관 역할

가. 바우처 서비스 제공

-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바우처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개선 노력
- 바우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대상 홍보 등

나. 제공인력 모집·교육 및 노무관리

- 바우처 사업 참여 인력 모집 및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제공인력 노무관리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다. 바우처 서비스 관련 행정 처리

- 바우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종 자료·통계 등 작성 및 보고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각종 업무관리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의 바우처 업무 관련 지도·감독 및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 등

② 제공기관 등록

제공기관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지침’ 참조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나. 등록 관할기관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다. 등록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재가방문형)
-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관련법

인력의 자격기준(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제공인력
 - 가)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 재가방문서비스 제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라. 등록절차

참고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 신청·처리 흐름도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등록 접수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신청서 접수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제공인력 자격확인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심사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사업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가 가능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신청서 상의 사업자 등록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		
결정·통지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후 등록증 교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등록내용의 공지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 활용

☞ [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신청서_p119

☞ [서식 제7-1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_p121

☞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대장_p123

☞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사업자 등록증_p125

마. 등록 후 관리

1) 등록사항 변경(「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제공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사항(예시) : 제공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소재지, 연락처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_p126

☞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_p127

2) 제공자의 휴업·폐업 신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첨부)

* 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휴·폐업 사실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신고서에 기입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_p128

3) 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제공자는 등록말소(직권취소 포함), 휴·폐업 등의 경우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식 13호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함

- ☞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_p129
- ☞ [서식 제13-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_p131
- ☞ [서식 제13-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_p132

4) 제공자 지위승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지위 승계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_p133

3 시스템 관리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등록 후 아래 내용에 따라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리·운영

참고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후 관리사항 흐름도		
단 계	업무 내용	기 한
바우처 시스템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 프로그램 설치 * 초기 ID는 사업자번호(10자리), PW는 뒤 번호 5자리 * 전자바우처시스템 : http://nevs.socialservice.or.kr 	등록 후 즉시
↓		
제공기관 정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 등록정보 확인 - 등록 정보 오류시 시·군·구로 정보 수정 요청 	등록 후 7일 이내
↓		
제공인력 정보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등록 후 14일 이내
↓		
사업운영계획서 등록(지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계획서 및 서비스 개요서를 시스템에 등록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제공기관이 등록한 개요서를 14일 이내에 승인처리 완료 	등록 후 30일 이내
↓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를 이용할 계약 대상자 정보를 등록 - 대상자 정보 등록 후 서비스 제공인력을 매칭 	서비스 실시 전
↓		
단말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제 단말기 신청 	서비스 실시 전
↓		
제공인력 급여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인력 급여정보(급여, 사회보험 등) 입력 * 사전에 제공인력 정보를 등록해야 급여등록 가능 	매월 6~25일

4 회계 관리

가. 원칙

- 정부 바우처 사업의 회계는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 부문 사업의 회계와 분리해 관리
 - * 국비·지방비 등으로 지원되는 기타 보조사업과도 분리 운영

나. 제공인력 임금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을 제공인력 임금으로 지급
- 제공기관은 소속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지급 정보를 매월(6일~25일 사이)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 입력메뉴 :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제공인력급여관리》제공인력급여관리

다. 기관 관리·운영비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 사용
- 비영리기관의 경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당해 제공기관 자체 규정 또는 관리·감독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처리

5 개인정보 관리 등

가. 개인정보보호 의무

1)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의 개인 정보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
- 업무상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한 후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처리할 수 없음

관련법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공인력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
 - * 이때의 개인정보는 인적사항 외에 질병, 생활양식, 가정사 등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음

나. 비밀누설 금지 의무

-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종사자 등은 전·현직을 불문하고 정부 바우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 위반시 처벌

- 개인정보 보호 의무 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6 문서관리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나. 자료 보존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자료의 성격, 중요도, 원본·사본 여부 등에 따라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보존 기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법정) 보존 자료 : 5년〉

-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예: 서비스계약서 등)
-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예: 제공기록지, 결제 기록, 정부 지원금 관련 자료 등)
-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예: 본인부담금 납입 또는 결제 증빙 자료)
-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 제공인력 채용 시 자격 확인 자료(교육수료증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존 자료: 3년〉

- 제공인력 근로계약,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퇴직 관련 자료 등)

〈그 외 보존 권장 자료〉

-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보수교육 이수 관련 서류 등 <3년>
- 품질평가 모니터링 서류, 사회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등 가입 관련 서류, 그 외 행정기관 등 보고 및 처분 자료, 통계, 기타 운영실적 서류 등 <3년>
- 기타 중요도가 낮은 기관 자체 생산자료 <1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필수(법정) 보존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II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채용

가. 제공인력 채용

- 1) 응모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인력 채용 시 '취업 취약계층'에게 가점부여 등 우선 선발 필요
- 2) 채용주체 : 제공기관장
- 3) 채용시기 : 연중 수시
- 4)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요양보호사 자격 증명서, 건강진단서(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일 것),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예시

건강진단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

-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검진주기 : 신규채용 이후, 매 1년마다 진단서 갱신 첨부
* 갱신되는 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될 경우에 유효

나. 제공인력 정보등록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을 채용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를 즉시 등록(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
*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제공인력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 제공인력 신규 등록 시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비용결제 등에 사용할 제공인력 개인별 ID 생성
* 입력메뉴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2 제공인력 관리

가. 건강관리

- 모든 제공인력은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 채용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에 한함
- 채용 후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에 한함

* (예시) '19.7.1. 건강진단 판정을 받고 '19. 8.1. 채용된 경우라면 그 익년도부터 매 회계연도 ('20년도, '21년도 등)를 기준으로 새로이 건강진단(판정)을 받으면 됨

나. 안전관리 등

1)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2)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같음

* 고용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예 : 프리랜서 등) 업무 외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마련 필요

3) 안전교육

-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다. 노무관리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인력의 노무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 그 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련 법령상 기준에 따라 관리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단위 가입(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당면 적용 대상)

3 제공인력 교육훈련

가. 교육개요

- 1)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제공인력 재직자
- 2) 교육시간 : 연 8시간 이상
 -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장 법정교육 시간은 보수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할 수 없음
 - * 법정교육(예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보건·안전교육 등
 - 단, 사업장 법정교육이라도 교육 내용을 직무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실시한 경우는 교육시간으로 인정
 - * 맞춤형 교육(예시) :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 이용자 안전사고 유형 및 응급 대응법 등
- 3) 시행주체 : 제공기관

나. 교육방법 및 내용

- 1) 교육방법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교육이수 의무시간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실시
 -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사업 등의 직무분야 보수교육 이수 시간 인정
 - *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사업 :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등
- 2) 교육내용
 -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대상자	교육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제공 기관장·관리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제공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보조법 등 - 인지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력 향상 지원방법 등 - 가사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관리법 등 - 사회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정보 활용 등 - 건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운동 보조방법 등 - 가족관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교육법 등 - 일상생활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법 - 일상생활 서비스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일지 작성법 등 - 가사관리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관리 및 설계, 가사기본관리, 정리수납 등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기본이론 및 기법 • 현장 클레임 대응법 • 방문 매너 이미지 메이킹 • 실무서류 작성 등

다. 보수교육 지원기관

- 보건복지부 위탁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도 지원단](#))

* 집합·위탁 교육과정 운영, 교육 커리큘럼 지원, 강사 지원 등

④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

가. 개요

-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공자의 등록기준, 제9조 관련)

- 2) 목적

-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자격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시·군·구가 인정한 인근 주민 등을 임시 제공인력으로 일시 투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차질 방지

- 3) 인정주체 : 시·군·구청장

- 4) 인정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등록된 제공인력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 5) 인정 제공인력 소속 : 시·군·구가 지정한 인근 제공기관

- 제공인력에 대한 기초교육, 급여지급,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군·구는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이 인근 제공기관에 소속될 수 있도록 조치, 인근 제공기관은 지정에 협조

나. 인정방법 및 절차

1) 인정 제공인력 요청

- 서비스 요청을 받은 제공기관이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속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에 요청
-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요청도 가능

2) 인정 제공인력 요건 확인 및 투입 허용 결정

- 시·군·구(또는 제공기관)는 요건 확인 후 인정 제공인력 투입 허용
 - * 요건 확인 업무는 제공기관에 위임 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인정 제공인력 서비스 투입 전까지 시·군·구에 보고

관련법

인정 제공인력 관련 시·군·구 확인사항(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

- ① 이용자의 추천여부
- ② 해당 시·군·구 거주여부(타 시·군·구 거주시 배제)
- ③ 가족 제외 규정 삭제(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허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 사업 지침에서는 ‘동일 주민등록 세대’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3) 지원수준

- 인정 제공인력(일반) :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의 100% 인정
- 인정 제공인력(가족) :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
 - *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대비 50% 감산한 바우처 생성
- 시·군·구가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 투입을 허용하거나, 제공기관이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 시·군·구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 관계’임을 명확히 통보(보고)하여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조치
 - * 제공기관은 계약자 정보 등록 시 ‘매칭 인력 정보’에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임을 입력
 - * 제공인력 변경으로 인한 바우처 변동(정상 ⇔ 감산)은 정보입력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가족인 인정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누락 등으로 감소된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고, 정상 바우처가 생성·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
 - *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참고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174,000원	월 174,0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163,560원	월 10,44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195,750원	월 189,880원	월 5,87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184,010원	월 11,7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290,000원	월 290,000원	면제

* 제공인력의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 원칙(예시 : A-나형인 경우, 서비스 가격이 월 174,000원, 본인부담금은 월 10,440원,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의 임금은 월 130,500원 이상이 됨)

5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대체인력 풀(pool) 구축

-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제공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임시 투입 가능한 유자격자 풀(pool)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차질을 최소화, 장기간 제공인력 파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 연계하여 대상자 관리

Ⅲ 원거리 교통지원금

①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참고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지역

- ① 읍·면 지역
 - ②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 ③ 도(道),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 내 동(洞)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이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고, 이동교통편(대중교통 운행횟수, 배차간격, 대기시간, 환승조건, 요금 등을 종합 고려) 또한 매우 취약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 ③항 대상지역은 시·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선정
 * (선정절차) 시·군·구 신청 → 시·도 승인 → 보건복지부 보고 → 사회보장정보원 통보

제5면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나. 지원 제외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이동 거리가 3km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 이동거리는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함

② 지원 방법 및 절차

가. 지원 금액

-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최단거리 적용)에 따라 정액 지급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일일 이동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는 먼 거리 이용자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함
- * 인정 제공인력(일반, 가족)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참고

이동 거리별 교통지원금 지급액

- ① 편도 3km 이상~10km 미만 : 4천원
- ② 편도 10km 이상 : 6천원

- 위에 따른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이동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비 또는 정액지원 등 방식으로 추가지원 가능

나. 신청 및 지원 절차

- 1) 신청권자 : 제공기관
- 2) 신청시기 :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 3)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제공인력 교체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동거리별 지원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적용변경 또는 적용중단 신청서 제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용중단(변경) 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원거리교통비 지원중단 제공인력을 등록하여 지급제외 처리
(전자바우처시스템 >> 대상자관리 >> 교통지원금관리 >> 교통지원금 제외 제공인력등록)

☞ [서식 제16호]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적용변경·적용중단) 신청서_p136

4)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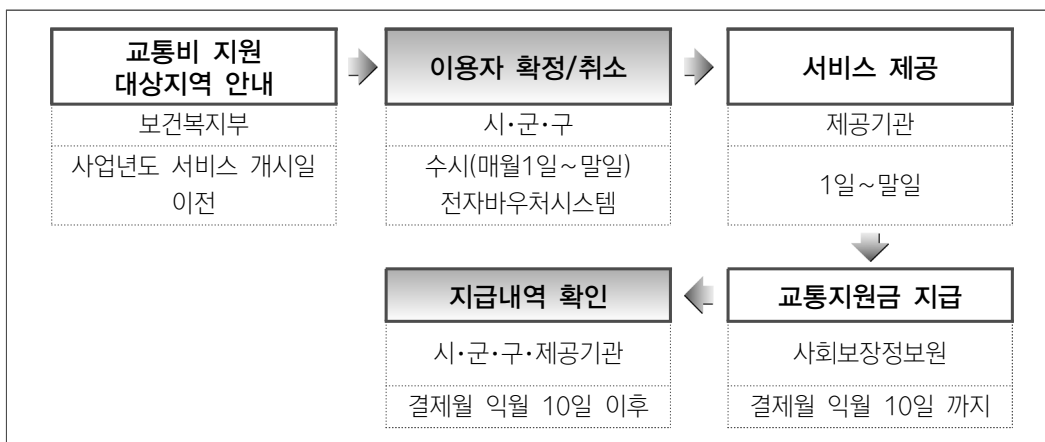
- 시·군·구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이동 거리를 검토한 후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입력
- 해당 이용자 정보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늦게 전송한 경우도 사유를 소명하여 지급 가능

* 원거리 교통지원금 예산부담 주체는 해당일 바우처 비용 예산부담 시·군·구

5) 지원금 집행 및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가 입력한 이용자에 대해 요건 심사 후 익월 10일까지 해당 제공기관으로 일괄 지급

참고 원거리 교통지원금 처리 흐름도



참고

사회서비스원' 정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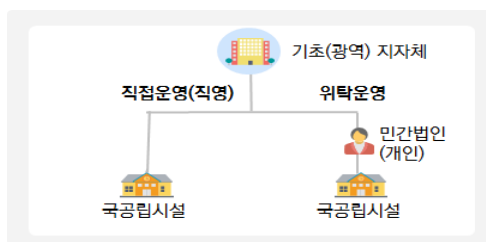
1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국정과제)
 - **그간 국·공립시설 운영방식인 '지자체 직접운영(투명성·책임성)'과 '민간위탁(전문성·효율성)'의 장점을 결합**하여 선도적인 국·공립기관 운영모델 마련
 - **개별적·분절적인 다양한 공공센터들을 통합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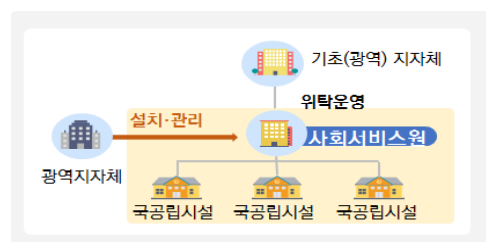
2 개요

- **(의의) 사·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 **(규모) '19년 4개소* → '20년 11개소** → '22년 17개소 확대**
 - * 서울·대구·경남·경기, ** (설치희망지역) 부산·인천·광주·세종·충남·강원·제주 ('19.2월 공모 후 확정)
- **(주요사업) ①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국공립 시설') 직접 수탁 운영**
 - * 신규시설, 위·불법 발생 등 문제시설, 평가결과 저조 시설 등 우선 위탁
- **②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 (예시) 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 '19년 10개소 → '20년 40개소(예정) → '22년 135개소 확대 목표
- **③ 민간제공기관에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등 지원**

기존 공급체계



신규 추가공급체계



3 운영방식

- **사회서비스원(본부 20명)에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시설 운영 전담관리**
 - 법률상 시설 운영주체인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공개경쟁 채용 및 투명한 인사관리 제도 운영, 각종 시설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 규모의 경제 활용한 효율적 운영, 복지부 및 시·도의 관리하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
 * '19년 4개 지역에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등 국·공립시설 37개소 운영 중(11월말)

종사자 관리		사업 운영방식	
고용주체	사회서비스원장	시설운영 재원	시설별 수입 (보조금, 수가)
고용형태	정년 보장 정규직 원칙 * 근무형태는 시간제, 전일제 등 다양	보조금 관리주체	사회서비스원
동기부여	승진·전보제도 운영	회계관리	발생주의, 복식부기
인사관리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성과관리	매년 서비스원 평가 (복지부)

※ 문의 : (중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9),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43-238-8674)
 (지역) 각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 (홈페이지) www.pass.or.kr

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M INISTRY OF H EALTH AND W ELFARE

01

부
록

관련 서식

**부록 1****관련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04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06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07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08
서식 제3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09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10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111
서식 제5-1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	116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118
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19
서식 제7-1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121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23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25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26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27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128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129
서식 13-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31
서식 13-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32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33
서식 제15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록지	135
서식 제16호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적용변경·적용중단) 신청서	136
서식 제17호	사실 확인서	137
서식 제18호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139
서식 제28호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140

[서식 제1호]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1.1>

(1 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 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3~5세) ([]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3~5세) ([]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연장, []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3~5세) ([]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신청요건(1개 선택)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월 24시간 <input type="checkbox"/> 월 27시간		
				<input type="checkbox"/>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input type="checkbox"/> 월 40시간		
주민센터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 유형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input type="checkbox"/> 언어 [] 청능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행동 [] 놀이심리 <input type="checkbox"/> 재활심리 [] 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 [] 심리운동 [] 기타()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진단 [] 언어재활 [] 기타 ()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 [] 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활동서비스 ([] 44시간 [] 88시간 [] 120시간) ※ 88시간/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서식 제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카드 수령지	수령인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
	직장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 환자 가족여행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 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제2-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서식 제3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제공인력)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제공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			
신청카드	발급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방문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카드 수령지	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직접입력		※ 제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직접입력'을 선택하고 수령주소 작성
	주소 □□□□□			
	수령인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부록 1
관련서식

[서식 제4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본 기관(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예금계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제6조(서비스 이용권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카드 제작 및 배송 ○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또는 전송 ○ 사회서비스 관련 만족도 등 조사 ○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관리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제공인력 퇴사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관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div style="text-align: right;">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div>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관련) ○ 상기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관련 만족도 조사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카드(실물카드) 제작, 배송 기관 - 중복수혜, 부정수급 확인 등과 관련한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관련기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div style="text-align: right;">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div>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연락처:



[서식 제5호]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전자우편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비우체)**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종합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수급자격심사위원회이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시간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 희망e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으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등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번통대응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제외

신청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대상 제외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기타()
안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한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 변경	사 유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정지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중지	사 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상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3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월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상실	사 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서식 제5-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7.1.1.>

☞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의 별지 안내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	
<p>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광역 지자체 내 등록된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2.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전까지 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p> <p>3.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입니다.</p> <p>4. 바우처 서비스 지원기간과 서비스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서비스 요일·일일 서비스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p>5.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margin: 0;">바우처 표준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보조 - 배변보조 - 옷입기·몸단장 보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재활운동 보조 - 청소, 세탁, 취사 - 양육보조 - 외출동행 - 정서지원 - 응급대응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margin: 0;">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 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이용자 의류 등 이외 세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목은 빨래 등) ● 이용자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다른 성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margin: 0;">지원기간 및 시간</p> <p style="margin: 5px 0;"> <input type="checkbox"/> 월 24시간 <input type="checkbox"/> 월 27시간 <input type="checkbox"/> 월 40시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요일 : 주()화, △, △, △ 요일 - 방문시간 : 1일 최소 2시간 이상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 명절, 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div>	

6.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요양보호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먹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6호]

공통서식[별지 제12호서식] <개정2019.4.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input type="checkbox"/>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 분이 있음 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 또 는 통 지 된 사 황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 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7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①서비스 종류	
---------	--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 ²	설비·비품
-------	------	----------------	-------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	-------------	---	---	------	---	---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	----	----	----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	----	----	----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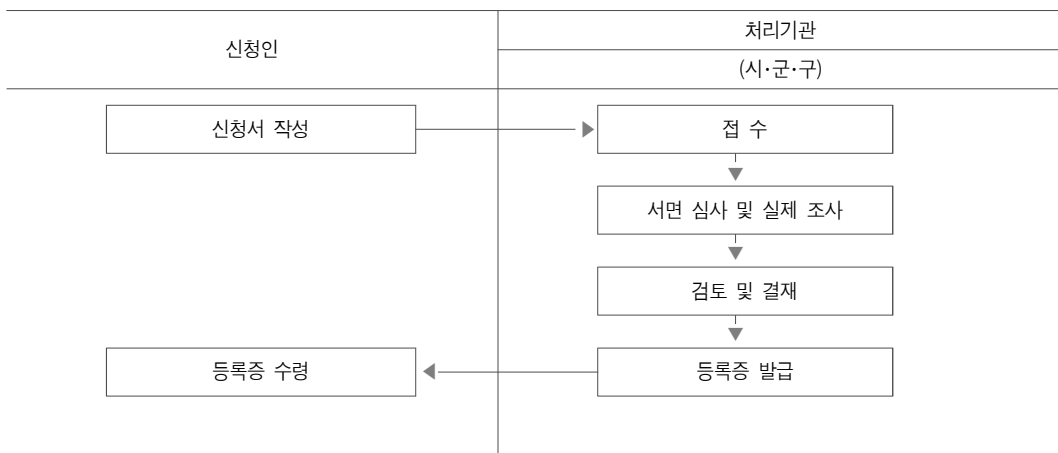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 ②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 법인의 경우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 제7-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2.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제공기관 소재지	
사업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 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 시·군·구 :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 현황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상 직위	주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생년월일	기관 내 직위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자격교육 이수 현황		경력사항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일	기타 국가/공인자격	근무지	근무기간	업무내용
		○					
		×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재가방문서비스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등
사무실	m ²			

추가확보 시설	사용목적	규모	시설관리 기본정보(주사업장 이외 소재 시설인 경우)			
	*예시(교육장, 실습실 등)	m ²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4. 필수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기타
확보여부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등 첨부



[서식 제8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설비·비품		
자격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비고

부록 1
관련서식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



[서식 제9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1. 기관명 :
- 2. 서비스 종류 : (세부사업명 :)
- 3. 법인·단체명 :
- 4. 대표자 성명 :
- 5. 기관장 성명 :
- 6. 소재지 :
- 7.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부록 1
관리서식

210mm×297mm[백상지 150g/ml]

[서식 제10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27.>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할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 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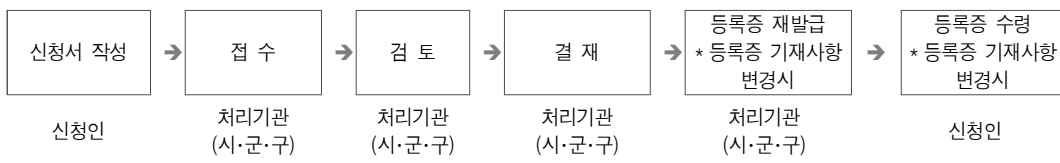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입니다.

-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④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설비·비품 ⑦ 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 또는 중질지(80g/m))



[서식 제11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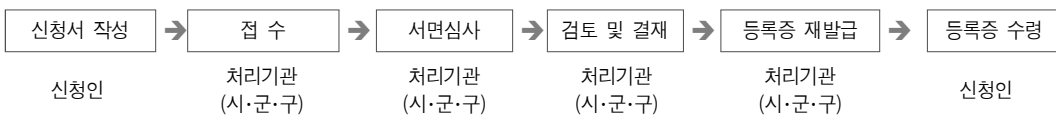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록 1
관리서식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3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일	휴업기간		
③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매, 개수				
구분	이관-()명()매, 망실 및 훼손-()명()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인계·인수				
구분	인계자	인수자	비고	
성명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 로만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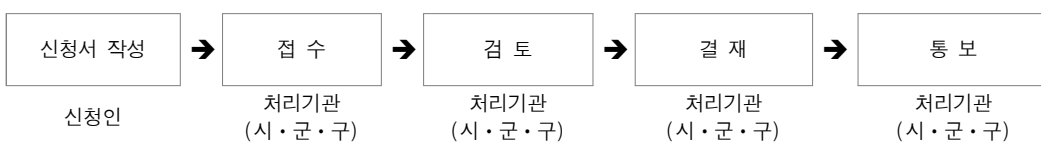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폐업일 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서식 제14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7.)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기관장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input type="checkbox"/> 영업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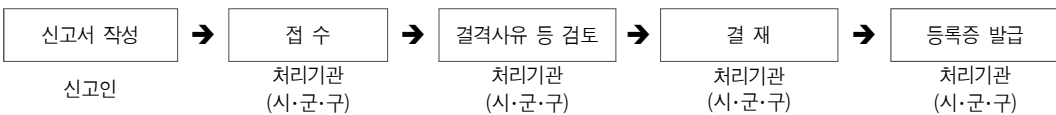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로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 또는 중절지(80g/m))



[서식 제15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7.1.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록지

이 용 자	생년월일	서비스 구분	<input type="checkbox"/> 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간병+가사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	제공시간	<input type="checkbox"/> 월 24시간(△,△,△ 요일) <input type="checkbox"/> 월 27시간(△,△,△ 요일) <input type="checkbox"/> 월 40시간(△,△,△ 요일)

제공 일자 서비스내용	'18. . . .	'18. . . .	'18. . . .	'18. . . .	'18. . . .	'18. . . .
시작시간	00:00					
종료시간	00:00					
① 목욕보조						
② 배변보조						
③ 옷입기보조						
④ 식사도움						
⑤ 체위변경						
⑥ 재활운동보조						
⑦ 청소						
⑧ 세탁						
⑨ 취사						
⑩ 양육보조						
⑪ 외출동행						
⑬ 말벗						
기타 (필요시, 직접기재)						
특이사항 (이용자상태 또는 서비스 제공계약 관련 특이사항)						
이용자 확인서명						

* 당일 제공한 서비스 해당란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는 공란 처리)

[서식 제16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2.1.>

원거리 교통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용변경, <input type="checkbox"/> 적용중단) 신청서			
이용자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전화번호
제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공인력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적용	지원 기준		지원액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3km 이상~10km미만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km 이상		비고
<input type="checkbox"/> 적용 변경	적용변경 사유		사유 발생일자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km이상→10미만km미만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km미만→10미만km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고
<input type="checkbox"/> 적용 중단	적용중단 사유		사유 발생일자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주소지 변경 <input type="checkbox"/>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3km 미만 지역에 거주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고
상기 이용자에 대한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적용중단)을 신청합니다.			
20 . . .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공인력·이용자 간 이동거리에 따른 적용 여부 및 지원금 결정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서식 제17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자체 서식 <적용 2016.6월>

사실 확인서

확인 내용

○

첨부자료 목록

○

20 년 월 일

제공기관명 :

사 업 명 :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직책) :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부록 1
관련서식

〈사실 확인서 작성 내용 및 요령〉

□ 작성 내용

- 서비스 제공(이용) 및 바우처 결제 사실, 해당 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간접 정황 내용 등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 증명범위 등을 고려해서 함께 작성

□ 작성 요령

- (작성 원칙) 사실 증명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사실확인서 서식 본문에 포함하고,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주의 사항)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주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증명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

[서식 제28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 실시간 미결제 사유

○

□ 미결제 사유 소명자료(첨부자료 목록)

○

20

제공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관 장 : (서명)

담 당 자 : (서명)

02

부
록

참고자료

**부록 2****참고자료**

순서	참고자료명	페이지
참고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	144
참고 2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147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174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180
참고 5	성장촉진지역	191
참고 6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192
참고 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	197
참고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

참고 1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

< 기본원칙 >

- ▶ 가사·간병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행위 및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 ▶ 표준 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전제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A. 신체 수발지원

A-1	목욕 등 신체청결
-----	-----------

- 이용자 건강상태에 따라 목욕방법을 선택하여 제공한다.
- 이용자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A-2	배설관리
-----	------

- 이용자의 대·소변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 배설 후 신체청결이 유지되도록 뒷처리를 한다.

A-3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하기
-----	--------------------

- 이용자의 질환 및 잠재능력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옷 입히기를 지원한다.
- 서비스 제공시 피부의 반점 등 상처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 갈아입은 의복을 정리정돈 한다.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면도, 손·발톱 다듬기, 머리단장 등 몸단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4	식사도움(장애시)
-----	-----------

- 이용자의 식사수행능력에 따라 식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B. 건강지원

B-1	체위변경
-----	------

- 이용자와 제공인력간 교차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관련 물품 및 신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B-2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애유형에 따라 실내이동이 불편한 사항을 확인한다.
- 이용자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B-3	감염예방
-----	------

- 제공자는 욕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욕창 예방을 위한 자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신체이상이나 욕창 발생 시 가족원에게 알린다.

B-4	복약돕기
-----	------

- 약포장 겉면의 이용자 이름, 약복용 정보(용량, 투약방법 등)를 정확히 파악한 뒤 투약한다.
- 약을 취급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고, 복용 후에는 확실히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B-5	안전관리
-----	------

- 이용자 집안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위험요소와 위험방지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가족원 등에게 알린다.
- 이용자 집안의 가스누출관리 및 화재관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C. 가사 지원

C-1	청소
-----	----

- 이용자의 직접적인 사용 공간을 파악한 후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청소를 수행한다.
- 청소 후 사용물품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C-2	세탁
-----	----

- 이용자의 세탁서비스로만 한정하며,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세탁한다.
- 세탁물의 상태로 하혈 등 건강 이상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자 등에게 알려준다.

C-3	취사 및 장보기
-----	----------

- 이용자의 건강 및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조리한다.
- 설거지 등 청결하게 뒷정리를 수행하며, 취사 후 남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원하는 식료품을 구매한다.
- 구입물품 내역을 알려주고, 영수증을 정리한다.

C-4	양육보조
-----	------

-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가구 내에서 양육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동일 가구 내에서 아동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양육보조를 제외
-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가구 내에서 양육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D. 일상생활 지원

D-1	외출 동행
-----	-------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외출계획을 함께 세우고, 목적지에 대한 교통편, 소요시간, 안전 및 편의 시설 등 사전정보를 충분히 습득한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한다.

D-2	정서지원 서비스
-----	----------

-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한다.
-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삶의 양식 등에 대해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 이용자에게 반어 또는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D-3	응급 상황 대응
-----	----------

-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가까운 병원, 응급센터(119) 등의 연락처 및 위치를 파악해 둔다.
-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센터나 가까운 병원 등에 연락하며, 보호자와 소속 제공기관에 알린다.

D-4	업무대행
-----	------

- 업무대행의 목적과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대행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업무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등을 준비하고, 진행과정과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린다.

E. 기타

E-1	제공기록 및 보고
-----	-----------

- 이용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또는 변화 등을 꼼꼼히 관찰한다.
-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제공기관에 보고한다.

참고 2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7호, 2019.1.1., 시행) 제17조의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호, 2020.1.1.,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계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 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쿠올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상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8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8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8	V108
	무과립구증	D70.8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8	V108
	호중구감소 NOS	D70.8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8	V108
	코스트만병	D70.8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8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8	V108
	베르너-슐츠병	D70.8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튼](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구조조직합성복합체 I 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구조조직합성복합체 II 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알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쥬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염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취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크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혹갈병	E70.2	V117
	알카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노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של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노증	E72.0	V117
	하르트넵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노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노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틴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아르지닌숙신산노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노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I, II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I, II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젓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뮤코지질증 IV	E75.1	V117
	GM ₁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 ₃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패프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쉐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라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벤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I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헐러증후군	E76.0	V117
	헐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II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리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 III [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뮤코지질증 II [I -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 I]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일슨병	E83.0	V119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1	V120
	남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레트증후군	F84.2	V122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건반사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중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G12.28)은 제외)	G12.2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56.4	V168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57.80	V168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 신경병증(전도차단동반)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라-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센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툼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	G73.1*	V259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츠	H35.01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멘저복합	I27.8	V226
	아이젠멘저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퇴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	I78.0	V297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홍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쳐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치사중간선육아종	M31.2	V135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 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쉐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가족샘종폴립증	M8220/0 (D12.6)	V281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 (킨빅)	M92.2	V299
	성인의 킨빅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의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덴디-위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용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I형)	Q21.2	V269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 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관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프란체스웨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윈베르크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티-엔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V155
	횡격막결여	Q79.1	V155
	횡격막 탈출	Q79.1	V155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태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즈-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피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좌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구분	상 병 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8호, 2019.1.1., 시행) 제17조의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호, 2020.1.1., 시행)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별첨 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 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 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T31.11, T31.21~T31.22, T31.31~T31.33, T31.41~T31.44, T31.51~T31.55, T31.61~T31.66, T31.71~T31.77, T31.81~T31.88, T31.91~T31.99)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별첨 1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류(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손상(S06)
수술명(수술코드)
가. 혈중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 S4622)
나. 뇌동맥류수술(S4641, S4642)
다. 뇌동정맥기형적출술(S4653~S4658)
라. 두개강내 혈관문합술(S4661, S4662)
마.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S4713)
바. 뇌엽절제술(S4780)
사. 뇌 기저부 수술(S4801~S4803)
아. 중추신경계정위수술-혈중제거(S4756)
자.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M6593, M6594, M6597)
차.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M6599)
카.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1, M6602, M6605)
타. 경피적혈전제거술(M6630, M6632, M6635, M6636, M6637, M6639)
파. 혈관색전술(M1661~M1667, M6644)
하. 천두술(N0322~N0324)
거.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N0333)
너. 혈관내 죽종제거술(O0226, O0227, O2066)
더. 경동맥결찰술(S4670)
러. 뇌내시경수술(S4744)
머.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HD113~HD115)

부록 2
참고자료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 ~ 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수](M31.4) 카.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 파.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	
수술명(수술코드)	약제성분명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나. 심장 창상봉합술(O1660) 다. 동맥관개존폐쇄술(O1671, O1672) 라. 대동맥축착증수술(O1680) 마.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O1690) 바. 심혈관단락술(O1701, O1702) 사. 폐동맥결찰술(O1703, O1704) 아. 심방중격결손조성술(O1705) 자.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11, O1721~O1723) 차. 판막협착증수술(O1730, O1740, O1750, O1760) 카.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70) 타. 판막성형술(O1781~O1783) 파. 인공판막치환술(O1791~O1793, O1797) 하. 인공판막재치환술(O1794~O1796, O1798) 거.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O1799) 너. 활로씨 4 증후군 근본수술(O1800)	가. Alteplase 주사제 나. Tenecteplase 주사제 다. Urokinase 주사제 약제성분명



- 더.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810)
- 러. 심내막상결손증 수술(O1821, O1822)
- 머. 좌심실류절제술(O1823)
- 버.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O1824)
- 서.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O1825, O1826)
- 어. 관상동맥 내막절제술(O1830)
- 저.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O1840)
- 처. 동정맥기형교정술(O1841)
- 커.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O1851, O1852)
- 터. 좌우폐동맥 성형술(O1861)
- 퍼.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O1873, O1874)
- 허. 라스텔리씨수술(O1875)
- 고.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O1878)
- 노. 대혈관전위증 수술(O1879)
- 도.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O0881, O0882, O0883, O0886, O0887, O0888, O0889)
- 로. 인공심폐순환(O1890)
- 모. 개흉심장마사지(O1895)
- 보. 부분체외순환(O1901~O1904)
- 소. 국소관류(O1910)
- 오. 대동맥내풍선펌프(O1921, O1922)
- 조. 심낭루조성술(O1931)
- 초. 심낭창형성술(O1932, O1935)
- 코. 심막절제술(O1940)
- 토. 폐동맥혈전제거술(O1950)
- 포.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O1960)
- 호. 심내이물제거술(O1970)
- 구. 심장중양제거술(O1981, O1982)
- 누. 심박기거치술(O2001, O2004, O2005, O0203~O0210)
- 두. 부정맥수술(O2006, O2007)
- 루.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O0211, O0212, O2211, O2212)
- 무. 동맥류 절제술(O2031~O2033)
- 부.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M6510)
- 수.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OZ751)
- 우.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M6521, M6522)
- 주.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M6531~M6533)

<p>추.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M6546~M6548) 및 냉각절제술(M0651, M0652) 쿠.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 M6553, M6554) 투.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 M6565~M6567) 푸.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M6571, M6572) 후. 경피적 대동맥관삽입(M6580, M6581, M6582) 그.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M6585) 누.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M6595~M6597) 드.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3~M6605) 르.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M6611~M6613) 르.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M6620) 브.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 M6634, M6638, M6639) 스. 혈관색전술(M6644) 으. 심장이식술(Q8080) 즈. 심장 및 폐이식술(Q8103)</p>	
--	--



별첨 3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구분	중증도	체표면적
1	T20.2 머리 및 목 2도 화상 T21.2 몸통의 2도 화상 T2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T23.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4.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5.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30.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T31.2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2	T20.3 머리 및 목 3도 화상 T21.3 몸통의 3도 화상 T22.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T23.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4.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5.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30.3 상세불명의 3도 화상	T31.11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T31.21~2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31~3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41~4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51~5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61~6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71~7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81~8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9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을 경우
3	T20.2~T20.3 머리 및 목 2·3도 화상 T21.2~T21.3 몸통의 2·3도 화상 (몸통 중 성기 및 회음부만 해당) T23.2~T23.3 손목 및 손의 2·3도 화상 T25.2~T25.3 발목 및 발의 2·3도 화상 T26.0~T26.4 눈 및 부속기 화상	
4	T27.0~T27.3 : 호흡기도의 화상 T28.0~T28.3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 고시」[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9호, 2019. 7. 1., 일부개정]

■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무의동		팔미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선미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영흥면	부도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륵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달동	달리도, 외달도	
		울도동	울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 송여자도,	
		남면	금오도, 수향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울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흥도	
보성군	별교읍	장도, 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전남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향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회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넓도, 서넙도, 어룡도, 대장구도, 대재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한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울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약도, 화도	
	임자면		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본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전남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흥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울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령도
		팔금면	본도
		암태면	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향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익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사랑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사등면		고계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경남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노도
		미조면	(미조리)조도, 호도
	창원시	구산면	큰닭섬, 실리도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삼산면	와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 벽지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마곡길, 모곡로 463~535
		내면	울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살둔길 9~198, 살둔강변길 9~200
			울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여차동길 386번길
			광원리	삼봉휴양길 276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	내평길
			부귀리	삼막길 6-4~67, 부귀로 782-8~954, 텃골길
			물로1리	삼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대동리	대동길
			대곡리	더운샘길
			추전리	북산로 1039~1053, 소양호로 650~652
	청평2리	삼막길 534~663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6~33, 봉명로 227번길 6~68, 봉명로 593번길 1~103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96, 월안1길 1~113
	강릉시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단경로 928-9~211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579~056, 부연동1길 70~6-12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59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49-33
		가곡면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덕품길 984-131~11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2리)벌막, 축덕	수림대길 698~714-66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 곶리, 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1030~1414-78
		대관령면	(용산2리)위곧은골, 윗노삼동	올림픽로 1062-6~1076-5 원복길 608-14~645-4
			(유천3리)선바위	원복길 542-6~593-14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3반)가잔동	부연동길 1303~1459-69, 1459-71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8, 송이로 1485~1516 노루골길 384~456
		서면	오색리	대청봉길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운치3리)설논	설론길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1, 노루마당길 37~270-47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간동면	방천1리	신내길, 갯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방천2리	운수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798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발길 513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한석산로 2063~2387
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신월리	신월로, 신월안길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길, 설피발길 조침령로 2092-13~2250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반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상남면	미산1리	왕성동길, 내린천로 1130~1875, 개인약수길
		북면	용대리	백담로 1755, 백담로 1925, 백담로 1220
	고성군	간성읍	탑동2리	탑동길 512~724-48, 관대바위길 491
			어천3리	관대바위길 38-18~278, 꽃내마루길 20-20~136 꽃대마을길 48-25~202
			흘2리	흘리령길 95~398, 흘리령1길 60~203
		현내면	배봉리	배봉길 2~14, 백두대간로 1097~1247-14 금강산로 737-22, 명파2길 29~35
			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931-14, 마달1길 1-5~90 마달2길 19~52, 89-3~176, 유천쌍계길 53, 245 건봉사로 747-6~747-12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3, 동해대로 9375~9386
			사천리	동해대로 9049~9109, 통일전망대로 180
	속초시	설악동	-	설악산로 1119-542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용전1길 6-11~422-4, 용전리 1807
		단장면	(감몰리)당고개마을	용소길 2-3~273, 용소2길 1~24-4
			(고례리)바드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고례5길 11-5~26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평발길 19~80-13, 화악산길 351~487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청도면	(조천리)무시덤마을	조천길 257~520-46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오부면	(일몰리)일몰	방실일몰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금서면	(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시천면	내대리	세석길 217-573
			중산리	지리산대로 320-10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경남		삼장면	유평리	평촌유평로 140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화개로 1282-214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로373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길 865-13~1438
			황점리	황점1길 70-100~807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199-24(남대리) *영부로 1028-10은 제외 영부로890번길 17~236(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하나동1길, 하나동2길, 송죽동1길, 송죽동2길, 행복동길, 낙원동길
		은척면	장암2리	수예길 16~132
		화남면	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동로면	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농암면	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다락갈골길 220-9~279-72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낫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비리동천길 335~635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319	
	수비면	(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본신리)번동	본신로 95-3~348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직천길 666 ~ 688	
	지품면	옥류리	내옥류길, 외옥류길	
	축산면	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두음리)뜸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일월산길 14-28~194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왕피길 589~1762-8	
			(전곡리)원곡	전곡2길	
			전내	전곡1길	
		근남면	(구산3리)원심	원심길	
			오르마	왕피천로 762-1~784	
	매화면	(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84~24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1, 영죽요골길 47~189 영죽고개길 411~644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수길 4~53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65~2275, 호반로1길	
			단돈리	호반로 2686~2866, 호반로3길 62, 호반로3길 64, 호반로3길 69, 호반로3길 70	
			방흥리	호반로 2408~2471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2리)장선이	장선길 293-2~299
			복수면	(목소리)소량, 두만, 가왕	두만길 101~12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범어	운정길 63~506-6
			(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352~384
			박실	청운2길 82~125-8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6~422
			(지천리)지천	지천길 343~437-12
			(용운리)외안날	용운1길 174~202-68, 용운2길 53~89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길 324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호곡마을	호곡1길 244~367, 호곡2길 119-59~158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칠관로 842-1150
경기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참고 5 성장촉진지역

■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3호, '19.9.10., 일부 개정)

■ 해당지역(70개 지역)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8)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9)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합계	70개 시·군



2.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기타 합의사항

제1조(계약의 효력)

-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 단, 이용자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조(계약의 변경)

- ① 계약기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해지·종료)

- ① 이용자와 제공자는 계약의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의사와 해지사유를 적어도 해지 희망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서비스 제공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③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 성폭력·성희롱, 이와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④ 이 계약은 이용자 또는 제공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연령초과, 장애등급 하락, 기타 정부 바우처 자격의 중단 등의 경우 종료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

- 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 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 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자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 ○○○ 서명

(대리인 △△△ 서명)

서비스 제공자 ◇◇◇ 직인 또는 서명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 안내문

- 서비스 비용은 당일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자택에서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합니다.
 - 따라서,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며, 제공인력이나 타인이 보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 카드를 제 3자가 소지·보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매달 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바우처 서비스 지원기간과 서비스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요일·일일 서비스 시간 등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및 시간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

- 방문요일 : 주()화, △, △, △ 요일
- 방문시간 : 1일 최소 2시간 이상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 명절, 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표준 서비스

- 목욕보조
- 배변보조
- 옷입기·몸단장 보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재활용운동 보조
- 청소, 세탁, 취사
- 양육보조
- 외출동행
- 정서지원
- 응급대응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예시)

- 이용자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미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이용자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목은 빨래 등)
- 이용자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다른 성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서비스 이용 관련 관련문의 ○○○제공기관(전화 000-0000, 홈페이지 www.abc.co.kr)

6.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요양보호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⑧ 서비스 제공기록지 내용(서비스일자 등)이 사실과 다름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서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관련문의 ○○○제공기관(전화 000-0000, 홈페이지 www.abc.co.kr)



참고 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

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가. 제공 기관 등록	① 등록증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등록증 확인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제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처벌
	② 등록기준 유지 여부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각 1명 (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나.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이상, 농어촌지역은 3명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6조, 법 제23조 ● 법 제36조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나. 기관 운영	① 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관의 회계와 분리 관리 ● 바우처 회계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② 기관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 관리체계 구축(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유도) ● 제공인력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8시간 이상(1/2 이상은 전문가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③ 보고의무 〈법 제32조〉 〈인력관리안내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정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등 ● 제공인력 급여 및 사회보험 정보 등록(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다. 제공 인력 관리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 자격(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자격 미소지자 서비스 제공 여부 (제공시,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 환수 (법 제21조) ● 법 제16조 제2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행정처분
	② 제공인력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시 3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 -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③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가입 	

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의 기준에 의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④ 퇴직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 	● 행정지도
	⑤ 제공인력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 임금, 근로시간, 휴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연차 및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공인력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 제공인력 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단가 75%이상 지급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하여 75% 이상 ● 제공인력 관리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사 정보, 급여·사회보험 정보 등 입력실태 	● 행정지도
	⑥ 제공인력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예외 : 가족인 인정제공인력) * 가족(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가족(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도 ● 환수
라. 이용자 관리	① 계약서 등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 행정지도
	②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징구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행정지도



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마.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록 작성여부 및 충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이용자 확인서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도 서비스 미제공시 부당결제에 의거 조치
	② 기준정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 횟수, 출퇴근 시간 등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③ 서비스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자체 모니터링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방법, 모니터링 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도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9조 제7항 제3호,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제2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행정지도
	② 정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제원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결제 여부(시간외 결제, 휴일결제, 일괄결제, 연속결제, 중보결제 등) - 예외결제시 사유의 정당성, 제공기록지 기록 여부 - 입·퇴원 당일은 결제 가능 부당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카드 부정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카드(ID)로 결제하는 행위 - 기타 이용자 카드 보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9조 제7항 제3호,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법 제23조, 법 제21조,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법 제21조 의거 부당이득 환수 행정지도
사. 확인서 작성	① 처벌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사항을 입증 할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기관(제공기관 명), 사업명 - 점검기간(부당청구 비율 산정시 활용) - 현행규정, 법률근거,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 -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검자 및 점검자 확인서명(수검자의 경우 기관 대표자 혹은 기관장에 준하는 자, 위임 받은 자) - 확인서는 확인자, 점검자 모두 보관 	
	<p>② 현장점검 사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 징수(법 제21조) : 징수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 - 벌칙(법 제36조), 과태료처분(법제40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16조), 기타 행정지도 등 - 법 제23조에 의한 제공자 등록 취소 시 청문(법 제24조)절차를 거침 ● 조치사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부당이득금 징수 등 ● 구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법 제25조) 	



참고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5호, 2018. 3. 13., 일부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p> <p>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p> <p>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p>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p> <p>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p>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p> <p>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p>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p>		<p>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p> <p>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p>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p> <p>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p>		<p>사회 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 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1.></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3.></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발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6. 5. 25.]</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2. 3.></p> <p>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③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 8. 31.></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p> <p>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31.></p> <p>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3.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생년월일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p> <p>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p> <p>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p>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p>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p> <p>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1.></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 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1.></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8. 21., 2015. 8. 31.></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p>		<p>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1.></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p> <p>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p> <p>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p> <p>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 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p> <p>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2. 8., 2018. 3.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p>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p>		<p>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이용자에게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p> <p>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을 정지된 경우 <p>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8.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p> <p>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p>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p> <p>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p> <p>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p> <p>⑧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p> <p>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과 그 밖에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p> <p>1.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p> <p>2. 제18조에 따라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다만, 제공자가 휴업을 시작하는 전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p> <p>3.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p>		<p>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8.></p> <p>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p> <p>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p> <p>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p> <p>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p> <p>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8.></p> <p>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 8. 8.></p> <p>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군</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不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p>	<p>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p>	<p>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8.></p> <p>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 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 8. 8.></p> <p>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1., 2017. 8. 8.></p> <p>③ 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p>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1., 2017. 8. 8.> [제목개정 2015. 8. 31.]</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1.></p> <p>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다.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 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 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p> <p>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 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p>	<p>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 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p> <p>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 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 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 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p> <p>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사회서 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p>		
<p>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p>	
<p>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p>	<p>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p> <p>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1.></p>	<p>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p> <p>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8.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방법·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p> <p>〈개정 2016. 11.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p> <p>〈개정 2016. 11. 1.〉</p>	<p>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p> <p>〈개정 2017. 8. 8.〉</p> <p>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p> <p>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p> <p>〈개정 2017. 8. 8.〉</p> <p>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p> <p>〈개정 2017. 8. 8.〉</p> <p>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④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8.></p> <p>⑤ 사회보장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31.]</p> <p>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보칙		
<p>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p> <p>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3.></p> <p>③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2. 3.></p>	<p>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1. 1.></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6. 5. 25.]</p>
<p>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받</p>	<p>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p>	<p>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p> <p>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9. 11.]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9. 11.>]</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p>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p>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벌칙		
<p>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p> <p>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p> <p>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p>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p> <p>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p>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p>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 관하지 아니한 자</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 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 료를 제출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문의사항 연락처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 일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련 :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 (단축 4번)
- 행복e음시스템 관련(신청 및 결정, 통보관련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콜센터 1670-0129
- 바우처결제단말기 보급 : 1899-0656
- 정책 및 제도개선관련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이용자 선정, 서비스 관련
사회서비스정책과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 제공기관 등록 기준